

# 장서각 소장 장현세자(莊獻世子) 예필진적(睿筆眞蹟)

이완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부교수, 한국미술사 전공  
yiww@aks.ac.kr

- I . 머리말
- II . 장서각의 장현세자 예필진적 12점
- III . 정조의 장현세자 예제예필 수집과 편집
- IV . 맷음말

## I . 머리말

장현세자 이선(李愓, 1735-1762)은 영조와 영빈이씨 사이의 둘째아들로 1735년(영조 11) 1월 21일 축시에 창덕궁 집복헌에서 태어났다. 이듬해 1736년 3월 15일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徐氏)의 후사로서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742년 3월 성균관 입학, 1743년 3월 관례, 1744년 1월 풍산홍씨 봉한의 딸님 혜빈홍씨(惠嬪洪氏, 1735-1815)와 가례를 치렀다. 또 1749년(영조 25) 1월부터 영조를 대리하여 정사에 임했으나 곧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고 1756년경부터 병증이 심해져 궁비(宮婢)와 환시(宦侍)를 살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결국 1762년(영조 38) 5월 말 나경언(羅景彦)이 세자의 허물 10여 조를 고변한 사건으로 인해 세자에 대한 마지막 바람을 놓아버린 영조는 다음 달 윤5월 13일 세자를 서인으로 폐위시키고 얼마 후 깊숙한 곳에 가두었다. 세자는 그달 21일 비운의 생을 마감했는데 이것이 임오화변(壬午禍變)이다. 사망 직후 영조는 ‘사도(思悼)’란 시호를 내려 복위시키고 그의 둘째아들 세손 이산(李祿, 1752-1800)을 효장세자(孝章世子) 이행(李暉, 1719-1728)의 후사로 삼아 왕통을 잇게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藏書閣)에는 책/첩으로 장횡되지 않은 다량의 낱장 필사물이 전한다. 이것들은 조선 후기 왕들의 어제어필 시문고(詩文稿)를 비롯하여 고문서 · 의례발기(儀禮件記) · 서간 등이다. 그중에는 영조와 정조의 어제어필 시문고가 다수이며 세자 이선과 세손 이산 등의 예제예필(睿製睿筆)도 들어 있는데, 특히 장현세자의 시문고 12점은 좀처럼 보기 드문 예이다.

이 글은 이들 장현세자 예필진적 시문고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조(正祖)가 장현세자 예제예필을 수집하고 그의 시문을 편집한 과정을 알아보겠다. 이를 위해 그간 알려진 장서각 외의 장현세자 예필을 통해 장서각 소장 예필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이들 시문고의 내용이 아들 정조가 편집한 장현세자 시문집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다.

## II. 장서각의 장현세자 예필진적 12점

장서각에 전하는 장현세자 예필진적(睿筆眞蹟) 12점은 1757년 3월경 정성왕후의 홍릉지문(弘陵誌文)을 작성할 때 남긴 초고를 비롯하여 1756년 · 1758년 · 1761년에 측근이나 일반인에게 써준 시문과 10점(시고 7점, 문고 3점)과 대자로 쓴 편액제서(扁額題書) 1점이다. 그중 1761년 4월에 작성

한 시문고 5점은 장현세자의 평양밀행(平壤密行)과 관련된 필적으로 특히 주목된다. 이들 예필진적의 명칭과 작성된 시기, 대략의 내용 및 장현세자 시문집 『능허관만고(凌虛關漫稿)』에 수록된 여부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여기서 이들 시문고의 지질과 크기 · 두께 · 무게를 알아보자. 먼저 〈홍릉지문초(洪陵誌文草)〉는 도톰한 장지(壯紙)로 다른 종이바탕에 비해 단위면적당 가장 두껍고 무거운 고급지로 여겨진다. 다음 1756년의 오칠언시고(五七言詩稿) 4점은 서풍과 먹색이 같고 바탕도 크기 · 두께 · 무게에서 근사한 측정치를 보인다. 그 다음 1758년 칠언시고(七言詩稿) 2점은 필사형식(1행 5자)과 작성된 시기는 근접하나 종이바탕은 다른 데, 그중 황석기(黃錫耆)에게 써준 칠언시고는 도톰한 담청색 종이에 채색 문양을 찍은 시전지(詩箋紙)로 조선 후기에 사용되던 고급지이다 (삼도1). 마지막으로 1761년 4월 평 양밀행 때에 쓴 종이바탕은 이대심(李大心)이 세자에게 올린 서찰을 제외한 모두가 1756년 · 1758년의 종이바탕과 좀 다르게 종이 뜰 때의 발(簾) 자국이 보인다. 그중 〈희증 파평주인〉은 두께는 가장 얇으나 조직이 치밀한 도련지(搗鍊紙)이다. 이대심의 서찰은 도톰한 고급지로 여겨진다(표2).



삼도1- 〈시황석기(賜黃錫耆)〉  
칠언시고의 채색문양 파초(芭蕉).

표1-장서각 소장 장현세자 예필진적 목록

명칭	작성시기	내용	『능허관만고』 수록
弘陵誌文草	1757. 3경	정성왕후 홍릉지문의 초고	권7 「貞聖王后弘陵誌」
書贈	1756	아무개에게 써준 오연절구	권1 「書贈」 癸酉(1753)
贈人	1756	아무개에게 써준 칠언절구	권1 「贈人」 其1 丙子(1756)
贈人	1756	아무개에게 써준 칠언절구	권1 「贈人」 其2 丙子(1756)
贈人	1756	아무개에게 써준 칠언절구	권1 「贈人」 其3 丙子(1756)
賜黃錫耆	1758. 2. 15	황석기에게 써준 칠언절구	권1 「贈人」 其4 丙子(1756)
賜崔善起	1758. 春	최선기에게 써준 칠언절구	권1 「書與說者」 丙子(1756)
戲贈坡平主人	1761. 4. 3	김성집에게 써준 칠언절구	권1 「戲贈坡平主人」 辛巳(1761)
李大心令旨	1761. 4. 8	이대심 신분을 밝힌 영지	권6 「題券」 辛巳(1761)
李大心書札跋	1761. 4. 8	이대심 답찰 뒤에 쓴跋문	-
王世子分付	1761. 4. 9	서필영 후손 잡역면제 분부	-
鶴軒題書	1761. 4. 10	이대심에게 써준 편액제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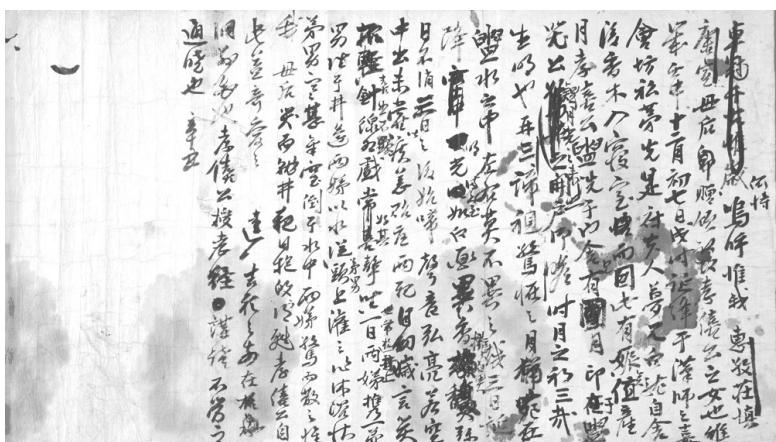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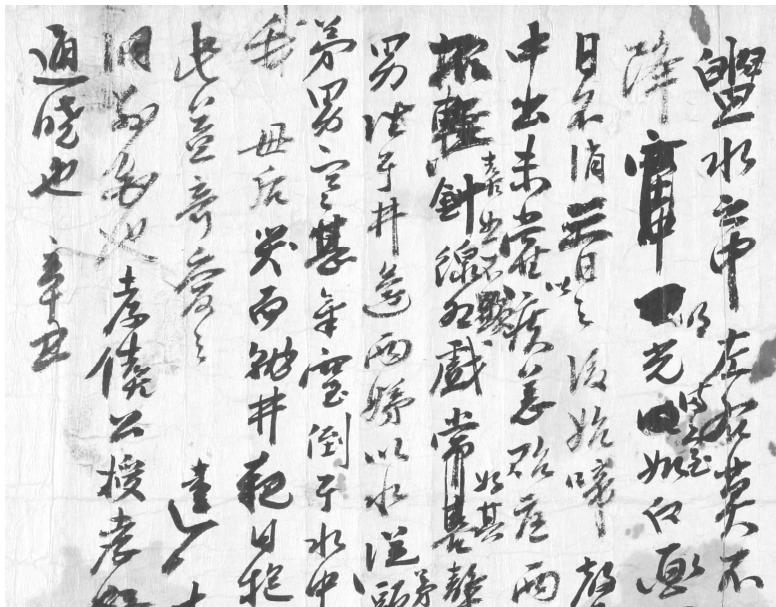
표2-장서각 소장 장현세자 예필진적의 종이비탕 측정치<sup>1)</sup>

분류번호	명칭	크기 cm	두께mm	무게g (g/cm <sup>2</sup> )	작성시기
2102	弘陵誌文草	35.5 × 61.5	0.32	29.05 (0.0135)	1757. 3경
2105	書贈	34 × 43.5	0.18	7.33 (0.0049)	1756
2108	贈人	34 × 42.5	0.17	6.60 (0.0046)	1756
2107	贈人	34 × 45	0.17	6.78 (0.0044)	1756
2106	贈人	34 × 45	0.17	6.56 (0.0043)	1756
2104	賜黃錫耆	34 × 54.5	0.21	19.90 (0.0107)	1758. 2. 15
2111	賜崔善起	30.2 × 45.5	0.15	5.48 (0.0040)	1758. 春
2109	戲贈坡平主人	34.2 × 49.0	0.09	10.05 (0.0063)	1761. 4. 3
2103	李大心令旨	33 × 57.5	0.17	16.75 (0.0088)	1761. 4. 8
2100	李大心書札	33 × 78.5	0.20	26.40 (0.0102)	1761. 4. 8
2101	王世子分付	47.5 × 39.5	0.15	10.29 (0.0055)	1761. 4. 9
2110	鶴軒題書	21.5 × 39.5	0.18	6.57 (0.0077)	1761. 4. 10

### 1. 1757년 홍릉지문초(弘陵誌文草)(도1)

장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23세 때인 1757년(영조 33, 丁丑) 3월쯤에 작성한 정성왕후(1692-1757)의 홍릉지문 초고이다. 장현세자는 정성

1) 2013년 8월 21일 측정. 온도 19°C, 습도 53%. 두께는 Mitutoyo corp. ID-S1012B (digimatic type, d=0.01mm), 무게는 Sartorius AG. BS2202S (digimatic type, d=0.01g).



도1-장현세자, 〈弘陵誌文草〉, 1757년 3월경, 35.5×61.5cm, 장서각.

왕후의 후사로 왕세자가 되었으므로 정성왕후는 그에게 모후가 된다. 왕후는 달성서씨 효희공(孝僖公) 종제(宗悌, 1658-1719)와 달성군부인 우봉이씨(1660-1738)의 딸로 1692년 12월 7일 북부 가회방 사제에서 태어났다. 연잉군(延礪君)의 짹으로 간택되어 1704년 2월 21일 안국동 송현(松峴)의 참봉 구수정(具守禎) 집에서 길례를 치렀고,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에 따라 1721년 9월 26일 세제빈이 되었으며, 왕세제의 즉위에 따라 1724년 8월 30일 왕비에 지봉되었다. 슬하에 자녀가 없이 1757년

2월 15일 신시에 창덕궁 관리합(觀理閣)에서 승하했다. 시호는 정성, 전호(殿號)는 휘령(徽寧), 능호는 홍릉이다.

이 초고는 『능허관만고』 권7에 실린 「정성왕후홍릉지」(貞聖王后弘陵誌)의 앞쪽 삼분의 일에 해당되는데 앞쪽 두 구절이 없고 뒤쪽은 “신축(辛丑, 1721)”에서 그쳤다. 내용은 왕후의 출생과 부모의 태몽, 어렸을 때 우물에서 기절한 남동생을 구한 일화 및 길례(吉禮) 전 별궁에 있을 때 효희공이 『효경(孝經)』을 강독했는데 왕후가 힘들이지 않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시문집에 실린 지문과 대부분 같으나 문구가 다른 곳이 많아 여러 번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성 시기는 「정성왕후홍릉지」 말미에 1757년 3월 21일로 적혀 있어 왕후가 승하한 2월 15일 이후 그 이전인 3월 전반쯤이 될 것이다.

(卓冠千古 惟歲)何恃, 噎呼 惟我惠敬莊慎」康宣母后, (即)贈領議政孝僖公之女也。維歲壬申十二月初七日戌時, 誕降于漢師之嘉」會坊私第。先是, 府夫人夢見白龍自舍後香木入寢室, (恪)而因此有娠矣。值產月, 孝僖公盥洗于內舍, 見有團月印(在)于盥器, 公(驚怪之)疑月光之來照, 開戶仰瞻, 時月之初三哉」生明也。再三諦視, 驚怪之, 月(印)猶宛在盥水之中, 左右莫不異之。越三日誕」降(室中□), 明光(□)滿室如白晝, 異香(□□)擁鼻, 彌日不消。三日之後始啼, 聲音弘亮, 若空」中出, 未嘗以疾患貽兩親。自幼歲, 言笑」不輕, 喜怒不顯, 針線爲戲, (常喜)好其靜坐(也)。常遊井上, 一日兩婢携一弟」男往于井邊, 兩婢以水從, 弟男頭上灌之, 作沐浴狀,」弟男寒甚, 氣窒倒于水中, 兩婢驚而散之。惟」我母后哭而就井, 親自抱歸而得甦。孝僖公自此益奇愛之。達吉禮之前, 在(於義)洞別宮也, 孝僖公授孝經(□)講讀, 不勞而通曉也。辛丑」

\*( )는 수정자

#### \* 『능허관만고』 권7 「정성왕후홍릉지」

詩云, 哀哀, 父母生我劬勞。又云, 無父何怙, 無母何恃。嗚呼天乎! 余生, 胡忍忍書玄宮之志, 志我終天之慟耶? 惟我母后, 贈領議政孝僖徐公諱宗悌之女, 母夫人李氏開城府岑城, 外內譜系, 詳於聖上所親製行狀, 顧小子不必復贅焉。維歲壬申十二月初七日戌時, 母后誕降于京師之嘉會坊私第。即聖祖在宥之十八年也。始府夫人有娠, 夢見白龍從舍後檀木入寢室, 及彌月孝僖公適盥洗於內舍, 見圓月印于盥器, 晃然如晝, 孝僖公疑月光之來照也。遂開戶仰瞻, 時月初三哉生明也。大驚異之, 諦視者, 再三月, 猶宛在盥水之中焉。見者莫不怪之。越三日有沙麓之慶, 明光下燭, 異香滿室, 彌日不消。過三夜始啼, 聲音弘亮, 若出金石中。未嘗以疾患貽兩親。即幼, 言笑不輕, 喜怒不形, 雖嬉戲之際, 以針線爲事, 常喜靜坐。一日遊井上, 兩婢及一弟男從之。兩婢以水灌弟男頭上作沐浴狀, 弟男寒甚, 氣窒仆水中, 兩婢皆驚走。母后哭而就井, 親自抱歸遂得甦。蓋慈仁惻怛之心, 根於天性, 而沈重弘遠之量, 不以急遽而

少失常度也。類如此，孝僖公益奇愛之。歲甲申，被聖祖揀擇，配我聖上，是時春秋十三歲也。封達城郡夫人，吉禮之前在別宮也，孝僖公授孝經講讀，不勞而通曉。歲辛丑景廟冊封聖上爲世弟，封母后爲王世弟嬪。…(후략)… 茲歲崇禎紀元後三丁丑季春念一日。

이 초고를 장현세자 예제예필로 보는 근거는 문구 중에 정성왕후를 “아모후(我母后)”라고 칭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조실록』 1757년 3월 12일 조에는 영조가 친히 지은 대행왕비(大行王妃, 정성왕후)의 행장(行狀)이 실려 있고 그 말미에 “친히 행록(行錄, 행장)을 짓고 인하여 지문(誌文)을 지어 길이 후세에 전하노라”라고 적혀 있다.<sup>2)</sup> 즉, 『영조실록』 편찬 때에는 홍릉지문을 영조어제로 보았다. 또 장현세자의 초기 시문집인 『예제시민당초본(睿製時敏堂草本)』에도 「정성왕후빈전 진향제문(貞聖王后賓殿進香祭文)」·「빈전상건수개고유문(賓殿床巾修改告由文)」·「윤여포전일고유제문(輪輿布展日告由祭文)」·「홍릉노제소제문(弘陵路祭所祭文)」이라는 진향문(進香文) 4편은 실려 있으나 홍릉지문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장현세자가 정성왕후 기록을 모아 『추감록(追感錄)』을 짓고 소지(小識)를 남긴 바 있다. 앞쪽에 왕후의 생력을 짧게 적은 뒤 “우리 모후의 아름다운 덕행은 성상께서 신조(宸藻: 어제)를 지어 곤범(壺範: 여성의 모범)으로 내리셨다. 소자가 어찌 감히 다시 짓겠나마는 지극히 자애로운 은혜를 갚지 못했고 추모의 심정을 폐지 못했으니, 삼가 모후의 본가에 성대한 자취로 기록된 것과 소자가 어려 슬하에서 놀 때부터 아침저녁 문안드릴 때까지 명심하라 써주신 것을 끌어다 눈물 흘리며 쓴다. 감히 나의 자성(慈聖)의 아름다움을 드날렸다고 말하겠는가? 다만 작은 정성을 만에 하나라도 표할 뿐이다. 이 편이 완성되었기에 ‘추감록’이라 이름 지어 길이 후세에 내린다. 때는 정축년 3월 21일”이라 적혀 있다.<sup>3)</sup> 영조가 행장이든 지문이든 지었으며 자신은 『추감록』만 지었다는

2) 『영조실록』 33년 3월 12일. “上親製大行王妃行狀，其文曰：后姓徐氏，本大丘，高麗少尹閔後孫。[…] 親製行錄，仍作誌文，永垂於後。”

3) 『능허관만고』 권6, 「追感錄小識」. “惟我母后，贈領相孝僖徐公之女也。妣岑城府夫人牛峯李氏，以壬申十二月初七日戌時，誕降于漢師之嘉會坊私第。丁丑二月十五日申時，昇遐于觀理閣，即大造殿之西翼閣也。春秋六十六歲。嗚呼！我母后懿德美行，我聖上鋪宸藻而垂壺範矣。顧小子何敢更而撰，而止慈之恩莫報，追慕之懷靡伸，恭將觀津盛跡之所紀錄者，及余小子自扶床繞膝，至問寢請安之時，所以書紳者，牽連泣書。其敢曰，揚厲我慈聖之懿美哉！祇表微忱之萬一云，爾篇既成，名曰追感錄，以永垂後世焉。時歲丁丑

것이다.

그러던 것이 『능허관만고』 권6에 「정성왕후홍릉지」가 수록된 것을 보면 언젠가 그것이 장현세자의 예제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그 시기가 혹 장현세자 시문집이 편집된 정조 후년이었다면 이 예필 초고가 알려짐에 따라 홍릉지문을 장현세자의 예필로 여기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장현세자가 홍릉지문을 작성하던 중 “신축(辛丑)”에서 그친 뒤 이어가지 못하자 영조가 이를 맡았을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추감록』 소지를 쓴 날과 「정성왕후홍릉지」를 마친 날이 같다.

여하튼 이 예필 초고는 장현세자의 어느 필적보다 자형이 분명하고 운필이 뛰어나 고법(古法)을 제대로 배운 티가 난다. 이 지문을 마친 뒤 여섯째 날 대왕대비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1687-1757. 3. 26)가 승하하자 왕실은 겹친 슬픔에 잠겼다.

## 2. 1756년 오칠언시고 4점(도2-도5)

장현세자가 22세 때인 1756년(영조 32, 丙子)에 오언절구 1수와 칠언절구 3수를 행초로 쓴 시고이다. 『능허관만고』 권1에는 이 오언시고가 「서증(書贈)」이란 제목으로 계유(1753) 부분에 실려 있고 칠언시고 3수가 「증인(贈人)」이란 제목으로 병자(1756) 부분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들 시고는 같은 질의 종이를 세로 34cm로 잘라 썼으며 먹색과 필치가 같아 누가 봐도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오언시고는 1753년이 아닌 1756년 필적으로 보아야 한다. 또 『능허관만고』의 해당 시구를 보면 이들 시고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원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들 시고의 내용은 아무개에게 보낸 당부와 격려, 권유와 바람이다. 첫째 오언절구는 등용된 뒤 가볍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당부와 오래지 않아 사헌부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는 격려이다. 둘째 칠언절구는 장부의 뜻은 영검(靈劍)처럼 오래 묻혀도 빛나고 대봉(大鵬)처럼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왜 임천(林泉)에 머물며 세상으로 나가기를 늦추고

---

季春念一日。”

있나는 출사(出仕)의 권유인 듯하다. 셋째 칠언절구는 밝은 구슬이 푸른 파도 위에 있으니 이번에는 검은 용(아무개)이 반드시 오르리라는 바람이며 스스로에 대한 바람이기도 한 듯하다. 넷째 칠언절구는 한 아들이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을 창성시킬 것이니 지금의 불우함조차 빛을 내리라는 내용이다. 이들 4수의 요지를 합치면 산천에 시는 능력 있는 젊은이에게 출사를 권유하며 필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장차 가문이 창성하리라는 메시지이다.

進用戒輕囂	나아가 쓰임에 경계가 가볍고 어리석으면
安行道自曉	어찌 도를 행하여 <u>스스로</u> 깨달으리오.
霜臺已虛席	상대(사헌부) <sup>4)</sup> 는 이미 빈 자리이니
不久帶金貂	오래지 않아 허리에 금초 <sup>5)</sup> 를 차리라.

\*『능허관만고』 권1 「書贈」

進用戒輕囂	나가 쓰임에 경계가 가볍고 어리석으면
安行道自饒	어찌 도를 행하여 <u>스스로</u> 넉넉하리오.
霜臺已虛席	상대(사헌부)는 이미 빈 자리이니
非久帶金貂	오래지 않아 허리에 금초를 차리라.

靈劍久埋光射斗	신령스런 검은 오래 문혀도 빛이 斗星에 뻔치고 <sup>6)</sup>
大鵬一起翼翩翩	큰 봉새는 한번 일어나도 날개가 펄럭펄럭. <sup>7)</sup>
丈夫得志皆如此	장부가 뜻을 얻음이 모두 이와 같은데
何必林泉滯遷延	하필이면 임천에 빠져 미루기만 하는가?

\*『능허관만고』 권1 「贈人」 其1

靈劍久潛光鏘鏘	신령스런 검은 오래 잠겨도 빛이 번쩍번쩍
大鵬初起翼翩翩	큰 봉새는 처음 일어나도 날개가 펄럭펄럭.
丈夫得志皆如此	장부가 뜻을 얻음이 모두 이와 같은데

4) 상대(霜臺): 司憲府 이정. 관리를 규찰·탄핵하므로 秋霜같이 엄하다 하여 그렇게 부름. 또 사헌부 앞에 측백나무를 심어 柏府라 부르기도 함.

5) 금초(金貂): 舜 때에 卿大夫에게 수레와 의복을 내렸고 漢·唐代에는 侍臣에게 담비털로 만든 金貂를 내려 허리에 차게 함. 조정의 높은 지위.

6) 『晉書』 권36 張華列傳에 西晉 武帝 때 문장가 張華(232-300)가 北斗와 牽牛 사이에 紫氣가 뻔치는 것을 보고 雷煥을 豫章의 豊城縣으로 보내 옛 獄舍 터를 발굴하여 龍泉과 太阿라는 名劍을 얻었다고 한다.

7) 『莊子』 「逍遙遊」. “齊諧者志怪者也, 諧之言曰,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何必林泉歲月延 하필이면 임천에서 세월만 미루는가?

五鼓喧喧不可閑 오고<sup>8)</sup>가 시끄러워 한가롭지 않은데  
一條雲路兩重山 한 가닥 높은 길이 두 겹 산에 걸쳤네.  
明珠已見滄浪上 밝은 구슬이 푸른 파도 위에 보이니  
此去驪龍必可攀 이번에는 검은 용<sup>9)</sup>이 반드시 오르리라.

\*『능허관만고』 권1 「贈人」 其2

五鼓喧喧不暫間 오고가 시끄러워 잠시도 한가롭지 않은데  
一條雲磴兩重山 한 가닥 높은 비탈이 두 겹 산에 걸쳤네.  
明珠已見滄波底 밝은 구슬이 푸른 파도 밑에 보이니  
此去驪龍儻可攀 이번에는 검은 용이 갑자기 오르리라.

起家一子最非常 집안 일으킨 한 아들이 가장 특별하니  
門戶榮華萬事昌 가문의 영화에 모든 일이 창성하리.  
從此有名並有利 이부터 명성이 있고 이로움도 있으리니  
目前蠱壞總增光 눈앞의 어려움도 모두 빛을 더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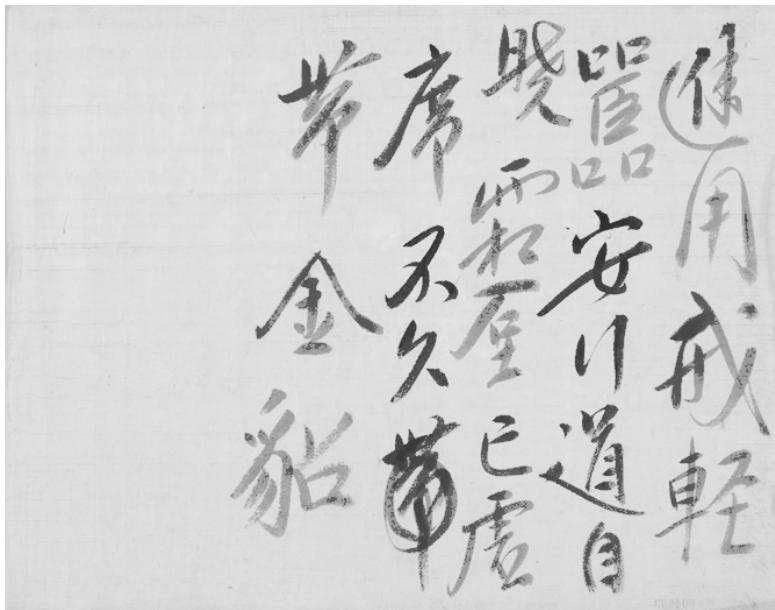
\*『능허관만고』 권1 「贈人」 其3

起家年少最非常 집안 일으킨 젊은이가 가장 특별하니  
門戶榮華占後昌 가문의 영화에 후손의 번창을 점치리.  
從此成名知不偶 이부터 명성을 이루고 불우하지 않거니와  
目前轚軻紙舍光 눈앞의 불우함도 빛을 머금으리라.<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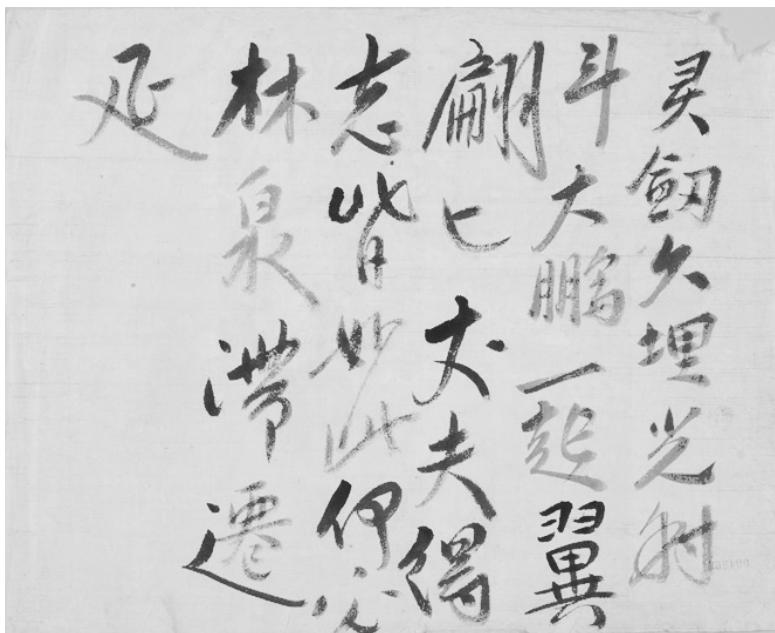
8) 오고(五鼓): 五更鼓. 새벽닭이 울 무렵 5更에 울리는 북. 『晉書』 권90 列傳, 제60 良吏, 鄧攸 條. “紂如打五鼓, 雞鳴天欲曙.”

9) 여룡(驪龍): 검은 용. 『莊子』「列禦寇」에 黑龍의 턱 밑에 진귀한 구슬이 있는데 어떤 이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잡자는 용의 구슬을 훔쳐왔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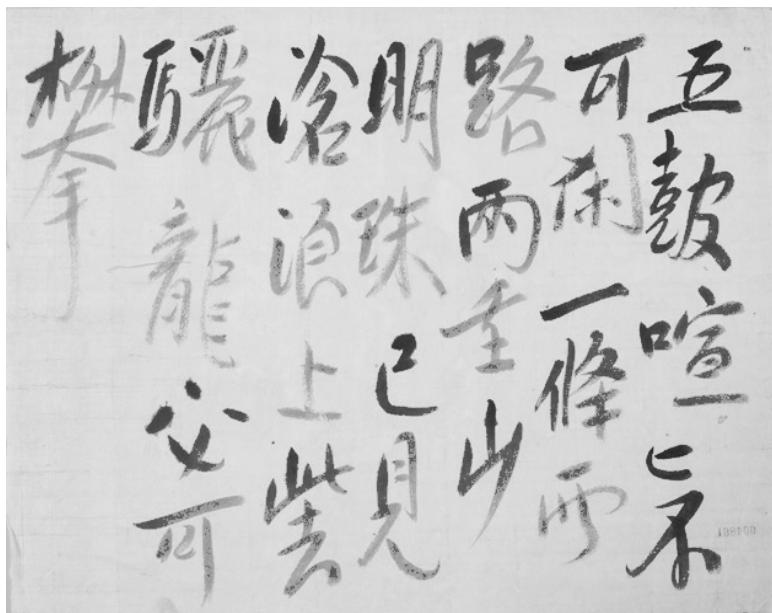
10) 감가(轚軻): 불우함을 뜻함. 孟子의 謂는 軻, 字는 子輿 또는 子居/子車. 『漢書』注에 “맹자의 자는 子車이다”라고 했고, 顧炎武는 “『禮部韻略』에서 『廣韻』의 軻자의 注를 인용하여 ‘맹자가 일생을 가난에 살다가(居貧) 불우하게 마쳤기(轚軻)에 이름을 軻, 자를 子居라 했다’라고 했으나 지금 『광운』 軻자 주에는 그런 글이 없다”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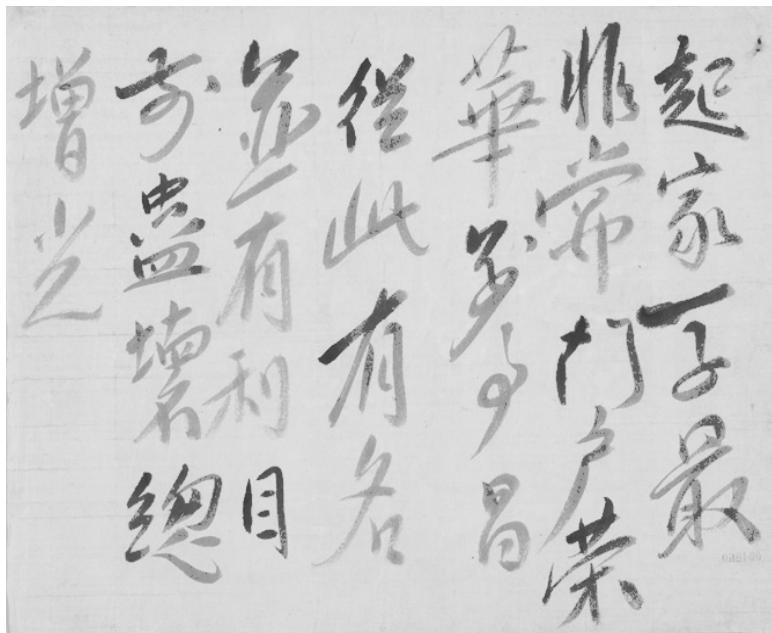
도2-장현세자, 〈書贈〉, 1756년, 34×43.5cm, 장서각.



도3-장현세자, 〈贈人〉, 1756년, 34×42.5cm, 장서각.



도4-장현세자, 〈贈人〉, 1756년, 34×45cm, 장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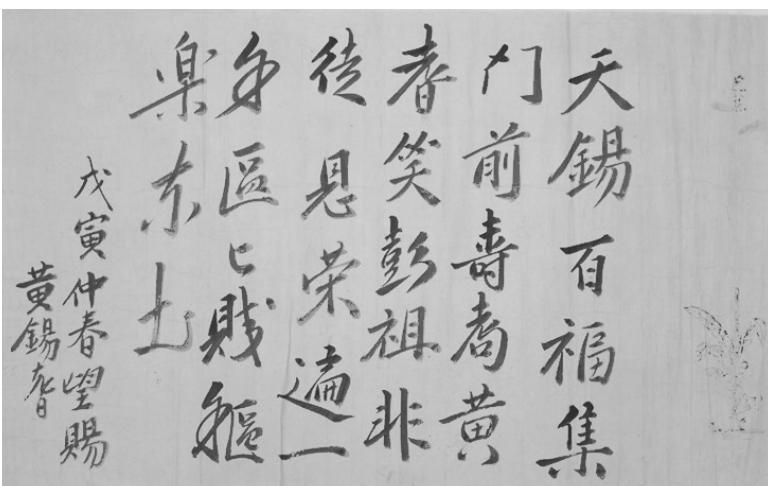


도5-장현세자, 〈贈人〉, 1756년, 34×45cm, 장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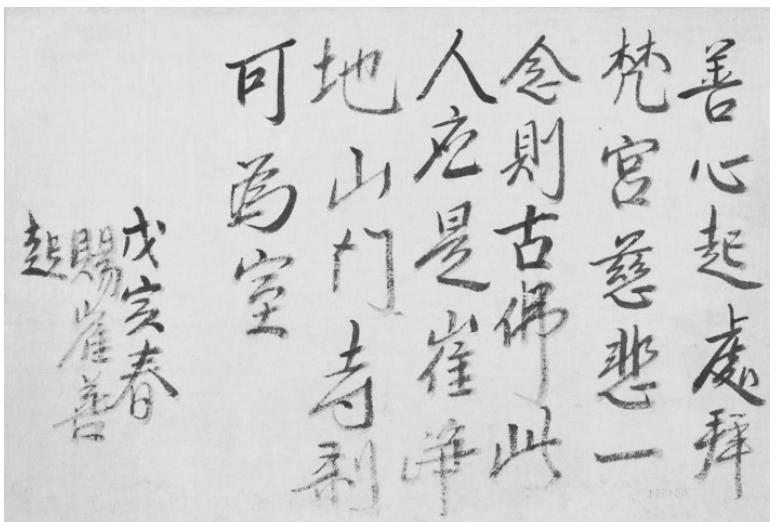
### 3. 1758년 칠언시고 2점(도6 · 도7)

장현세자가 24세 때인 1758년(영조 34, 戊寅)에 칠언절구 2수를 행서로 쓴 시고이다. 각 말미에 “戊寅仲春望 賜黃錫耆” · “戊寅春 賜崔善起”라 써서 1758년 2월 15일에 황석기에게, 1758년 봄에 최선기에게 주었음을 밝혔다. 이들 시고도 『능허관만고』 권1에 실렸으나 ‘무인(戊寅)’이 아닌 ‘병자(丙子)’ 부분에 실려 있다. 즉, 황석기 시고는 위 1756년(丙子) 「증인(贈人)」 칠언절구의 제4수로 실려 있고 최선기 시고는 1756년 「증인」 칠언절구 4수의 바로 앞에 「서여설자(書與說者)」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러나 이들 칠언시고는 앞서 본 1756년 오칠언시고 4점의 종이바탕과 서로 다르며 특히 파초 무늬를 채색으로 찍은 푸른 시전지는 전혀 다르다. 또 이들 칠언시고는 한 줄에 5자씩 어리숙하게 쓴 필치에서 서로 유사하며 1756년 오칠언시고의 유려한 필치와 좀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이들 칠언시고는 1756년이 아닌 1758년의 필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능허관만고』 권1에 실린 몇몇 시가 원래의 작성연대와 다른 간지(干支)에 수록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혹 예제시문을 편집할 때 연대 기록을 빼고 시만을 옮기면서 일어난 착오였을까? 또 자구를 고치더라도 전체 시의(詩意)를 살리는 선에서 그쳐야 하는데 최선기에게 준 칠언절구처럼 첫 구절 뒤쪽 세 글자와 나머지 세 구절을 모두 고친



도6-장현세자, 〈賜黃錫耆〉, 1758년 2월 15일, 34×54.5cm, 장서각.



도7-장현세자, 〈賜崔善起〉, 1758년 봄, 30.2×45.5cm, 장서각.

것은 과연 원작의 뜻을 배려했다고 할 수 있을까? 더욱이 원시에서 ‘佛·室’ 자였던 운자(韻字)를 시문집에서 ‘靈·庭’ 자로 바꾸면서까지 개작한 것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양상은 장서각 소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예제예필 문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후술하겠지만 장현세자 말년인 1762년 윤5월 9일 문고는 매우 크게 축약·개작되었다.

여하튼 이들 칠언시고에서 장현세자는 황석기와 최선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첫 구절을 이끌었다. 황석기의 칠언시고에서는 그가 이미 늙었지만 그의 백복과 안락을 바라는 뜻을 담았으며, 최선기의 칠언시고에서는 그가 착한 마음을 일으켜 부처에 귀의하여 정토에 오를 것이며 산문의 사찰을 집으로 삼을 정도라고 찬미했다.

황석기는 무관 출신으로 이 시고를 헌납한 일로 정조 때인 1790년경 동지증추부사에 가자(加資)되었고 뒤에 실직으로 빈 대궐인 경복궁의 위장(衛將)에 보임되었음을 보면 장수한 듯하다. 또 최선기는 내시 출신으로 장현세자가 평양밀행에서 돌아오는 날 공사청(公事廳 : 왕명을 전달하는 내시의 숙직처)의 차비대령 별감으로 입직한 일로 1761년 9월 임형을 받고 전라도 나주목에 정배(定配)되었다가 이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天錫百福來門前

하늘이 내리신 백복이 문 앞에 오니

壽考黃耆笑彭祖      장수노인 황석기가 팽조<sup>11)</sup>에게 웃음 짓네.  
非徒恩渥遍一身      은택이 한 몸에 두루 미칠 뿐 아니라  
區區賤軀樂東土      구구한 천한 몸이 동쪽 땅에서 안락하네.

戊寅仲春望, 賦黃錫耆. 무인년 이월 보름에 황석기에게 주다.

\*『능허관만고』 권1 「贈人」 其4  
天錫洋洋百福來      하늘의 주심이 성대하여 백복이 오니  
紅顏黃壽笑彭祖      붉은 얼굴 황노인이 팽조에게 웃음 짓네.  
不徒恩渥偏身家      은택이 몸과 집에 치우칠 뿐 아니라  
康色分明皇極五      편안한 안색 분명하니 황극오복<sup>12)</sup>이네.

善心起處拜梵宮      착한 마음 이는 곳 불전에 절하니  
慈悲一念則古佛      자비로운 일념은 바로 옛 부처이라.  
此人應是崔淨地      이 사람은 웅당 정토에 오르리니  
山門寺刹可爲室      산문의 사찰을 집으로 삼을 만하네.

戊寅春, 賦崔善起. 무인년 봄에 최선기에게 주다.

\*『능허관만고』 권1 「書與說者」 丙子 「설법하는 자에게 써 주다」 병자년  
善心起處人爲善      착한 마음 이는 곳 사람이 착해지니  
普濟羣生佛亦靈      중생을 널리 구제함에 부처도 영험하네.  
爾欲歸依觀世佛      네가 관세음 부처에게 귀의고자 하니  
楞嚴須讀雨花庭      능엄경<sup>13)</sup> 꼭 읽어 꽃비 내리는 뜰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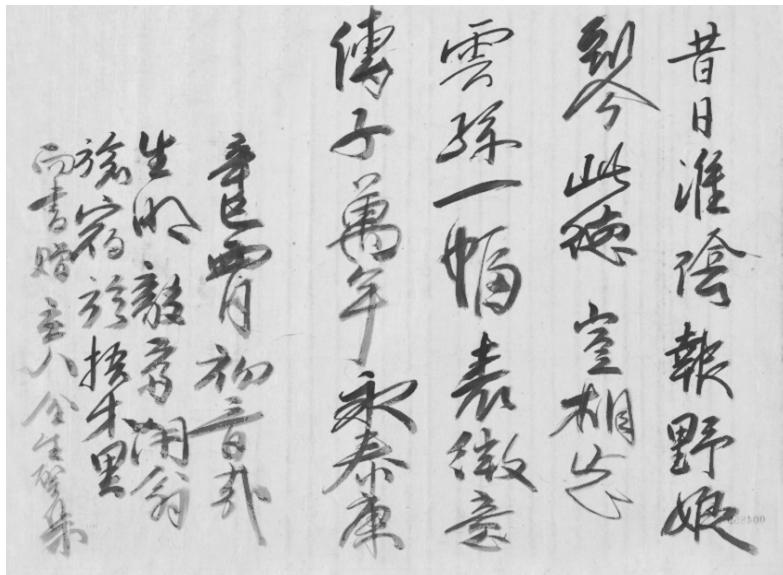
#### 4. 1761년 평양밀행(平壤密行) 때의 시문고 5점

장현세자는 27세 때인 1761년(영조 37, 辛巳) 4월 2-22일에 몰래 평양으로 놀러 갔다 왔다. 당시 장현세자가 남긴 시문고로 경기도 장단 오목리의 김성집에게 써준 행초 칠언시고, 평양 반포리의 이대심에게 써준 영지(令旨)와 이대심의 답찰에 대한 별문 및 ‘가학헌(鶴軒)’이란 편액 제서,

11) 팽조(彭祖): 堯 때 彭城侯에 봉해져 夏殷周 3대에 걸쳐 800년을 살았다는 전설의 인물. 『莊子』 遊逍遊 註.

12) 황극오복(皇極五福): 周 武王의 물음에 箕子가 응답한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大法, 즉 구주(九疇: 五行 · 五事 · 八政 · 五紀 · 皇極 · 三德 · 稽疑 · 庶徵 · 五福) 가운데 5번째 황극과 9번째 오복. 皇極은 만민을 위해 範則으로 세운 大中至正의 道. 五福은 壽 · 富 · 康寧 · 攸好德 · 考終命. 『書經』 周書, 洪範.

13) 능엄경(楞嚴經):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권, 약칭 『대불정 수능엄경』 · 『수능엄경』. 密教와 禪宗 사상을 설한 대승경전. 梁 武帝 때 雲光法師가 聚寶山 위 臺에서 講經하니 하늘이 감동하여 天花가 내렸다 하여 그곳을 雨花臺라 함.



도8-장현세자, 〈戲贈坡平主人〉, 1761년 4월 3일, 34.2×49cm, 장서각.

그리고 평양 동면 율사동의 서필영 자손에게 잡역을 면제시키라는 분부(分付)가 전한다.

### 1) 〈희증파평주인(戲贈坡平主人)〉(도8)

이것은 장현세자가 1761년 4월 3일 평양으로 가던 도중에 파평, 즉 경기도 장단(長端) 오목리의 김성집(金聖集)의 집에 유숙했을 때 그의 후의에 감사하는 뜻에서 써준 칠언절구 시고이다. 말미의 제사(題辭)에 보이듯이 ‘의재(毅齋)’라는 아호를 사용한 보기 드문 예이기도 하다.

앞쪽 구절에서 세자는 옛날 서한의 고조 유방(劉邦, 기원전 256-195) 때의 명장이던 희음후(淮陰侯) 한신(韓信, 기원전 231-196)이 짊어서 떠돌아다니며 끼니를 거를 때 먹을 것을 주던 아낙에게 나중에 은혜를 갚았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을 두터이 대해준 김성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뒤쪽 구절에서 세자는 김성집의 후손에게 한 폭으로 자신의 은미한 뜻을 표하니 만년토록 자손에게 전하여 길이 태평하리라는 바람을 담았다. 이 시는 『능허관만고』 권1 신사(辛巳, 1761) 부분에 「희증파평주인(戲贈坡平主人)」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자구 수정은 많으나 대의에는 큰 차이가 없다. 『능허관만고』에는 이 칠언절구 바로 앞에 당시 평양밀행 때 어떤 이에게 준 「서경증인(西京贈人)」이란 칠언절구 1수도

있는데 시간 순서로 보아 뒤바뀌어 실려야 할 것이다.<sup>14)</sup>

昔日淮陰報野娘      옛날 淮陰侯가 시골 아낙에게 보답했으니<sup>15)</sup>  
到今此德豈相忘      지금까지 이 덕을 어찌 서로 잊겠는가?  
雲孫一幅表微意      후손에게 한 폭으로 은미한 뜻을 표하니  
傳子萬年永泰康      만년토록 자손에게 전하여 길이 태평하리.  
  
辛巳四月初三日哉生明, 穀齋閑翁旅宿於梧木里, 而書贈主人金生聖集.  
신사년 사월 초삼일 재생명<sup>16)</sup>에 의해 한옹이 오목리에 여숙하며 주인 김성집에게  
써주다.

\* 『능허관만고』 권1 「戲贈坡平主人」 「파평주인에게 재미삼아 주다」  
昔日淮陰報濶娘      옛날 희음후가 빨래하는 아낙에게 보답했으니  
凡人有德貴無忘      평범한 사람의 덕은 귀하여 잊을 수 없네.  
雲孫一幅傳千載      후손에게 준 한 폭이 천년토록 전해져  
留作君家鎮世光      그대 집안이 세상의 빛을 누르게 하리.

## 2) 〈이대심영지(李大心衿旨)〉(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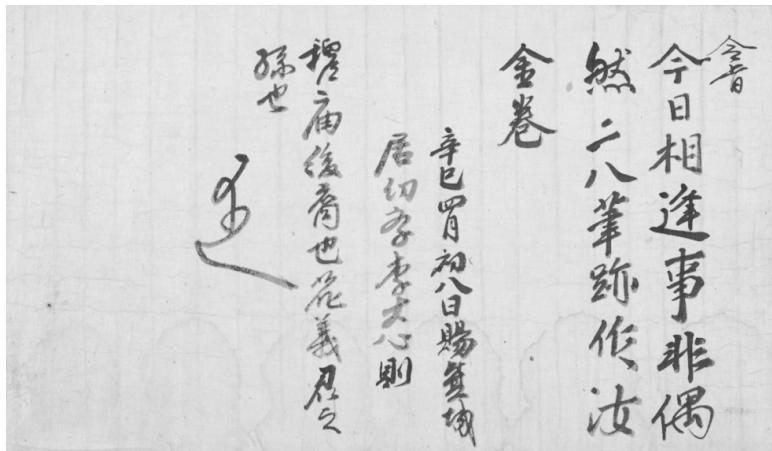
이것은 장현세자가 1761년 4월 8일 평양에 사는 유학(幼學) 이대심의 신분을 명시해주고자 예필로 작성한 문서이다. 첫줄에 ‘영지(衿旨)’라고 쓰고 다음 줄부터 사언구 16자의 본문을 쓴 뒤 줄을 바꿔 작은 글자로 연월일 및 해당인의 신분을 명시하고 말미에 압자(押字)<sup>17)</sup>를 했다. 그중 ‘영지’란 글씨는 글자가 작고 필치가 좀 달라 혹 본문을 작성한 뒤 문서형식을 갖추기 위해 추서한 듯하다. 내용은 평양부에 사는 유학 이대심이 선조(宣祖) 임금의 후예로 화의군(花義君)의 후손임을 밝힌 것인데 ‘화의 군’은 왕실 족보에 보이지 않는다. 이 영지는 『능허관만고』 권6에 「제권(題券)」이란 제목으로 앞쪽 사언구 16자가 수정되어 실려 있다.

14) 『능허관만고』 권1 詩, 「西京贈人」 辛巳. “翩然飛鶴過西洲, 勝似江南第一州, 借問朝天何處是, 一雙鱗馬立江頭.”

15) 漢 高祖 때 開國功臣이던 淮陰侯 韓信이 젊어 流落하며 끼니를 거를 때 먹을 것을 주던 아낙(노파)에게 뒤에 은혜를 갚았다고 함. 『史記』 권92 列傳, 淮陰侯.

16) 재생명(哉生明): 달의 밝은 부분이 처음 생기는 음력 초사흘. 『書經』「武成」注. “哉, 始也. 始生明, 月三日也.”

17) 압자(押字): 押은 署名의 뜻으로 이름이나 특별한 글자를 흘려 쓰는 사인(sign)을 말함. 왕의 압자는 御押, 세자의 압자는 睿押. 왕과 세자가 발행하는 標信에 사용되며 문서에는 붓으로 쓰거나 나무나 돌에 새겨 찍기도 한다.



도9-사도세자, 〈李大心令旨〉, 1761년 4월 8일, 33×57.5cm, 장서각.

#### 令旨

今日相逢，事非偶然。二八筆跡，作汝金卷。

辛巳四月初八日，賜箕城居幼學李大心，則穆廟後裔也，花義君之孫也。

#### 영지

오늘 서로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16자 필적으로 너의 金券을 짓노라.

신사년 사월 초파일에 평양에 사는 유학 이대심에게 주니 바로 宣祖의 후예이며 花義君의 후손이다.

\*『능허관만고』 권6 「題券」 「금권에 제하다」

邊不偶爾，爾叶爾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 너는 너의 바람을 이루었다.

二八筆跡，作汝金券。 16자 필적으로 너의 金券을 짓노라.

‘영지’란 왕을 대신하여 청정(聽政)하는 왕세자·왕세손이 문무관을 제수하거나 신하에게 칙유(飭諭)·중추(重推)·유사(宥赦) 또는 신하가 올린 상서에 대해 처분할 때 발부하던 문서이다. 문무관 제수의 경우 기본적인 서식은 왕명에 따라 이조·병조에서 작성하여 승정원을 통해 발부하던 교지와 같으나 연호 부분에 [施命之寶]란 어보 대신에 [王世子印] 이란 세자의 옥인을 찍는다(삼도2).<sup>18)</sup> 당시 장현세자는 밀행 중이었으므로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영지를 발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서식을

18) 영지에 관해서는 藏書閣 編纂, 『韓國古文書精選』 1 告身·王旨·教旨·令旨(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b), 178-190쪽 참조.

취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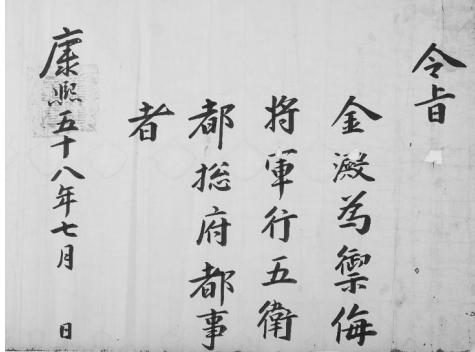
이 영지의 사연구에서 “…… 너의 金卷을 짓노라” 했고 『능허관만고』 권6 「題券」에서 “…… 너의 金券을 짓노라”로 고친 것을 보면 金卷과 金券의 뜻은 상통하는 듯하다. 혼히 공신에게 내리던 교서나 녹권을 ‘단서철권(丹書鐵券)’<sup>19)</sup>이

라 하듯이 ‘금권’의 정확한 뜻은 미상이나 왕실의 후예임을 밝힌 ‘왕세자 의 증서’ 정도로 여겨진다. 여하튼 이 영지는 통상적이진 않지만 왕세자가 직접 쓰고 말미에 예압(睿押)을 남겼다는 점에서 희귀한 자필 영지의 예이다.<sup>20)</sup>

이런 점에서 〈이대심영지〉 말미에 쓴 장현세자의 예압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1743년(영조 19) 3월 17일 창덕궁 시민당에서 관례를 치를 왕세자를 위해 영조가 전달 2월 30일에 직접 쓴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영조가 짓고 쓴 《훈유사편(訓諭四篇)》의 〈예압설(睿押說)〉에 잘 나타나 있다(삽도3).<sup>21)</sup>

[호] 나의 압자는 ‘通’자인데 예전에 하사받았다. 힘써 타이르고자 손수 써서 너에게 주나니 앞으로 사용하라. 어찌 몇 날 뒤 신하들이 지어 바치는 것에 비기겠는가?

공자께서 무왕·주공을 達孝라 부르며 “남의 뜻을 잘 계승하고 남의 일을 잘 기술하였다” 했듯이<sup>22)</sup> 繼述을 잘하는 것이 무릇 사람의 효이다. 그 큰 것은 孝悌일 따름이다. 비록 나의 양은 정성으로 너에게 계승하라 힘써 타이르지만 어찌 몸소 가르치겠는가? 요·순·문왕·무왕이 서적에 실려 있으니 바로 너의 스승이며, 우리나라에 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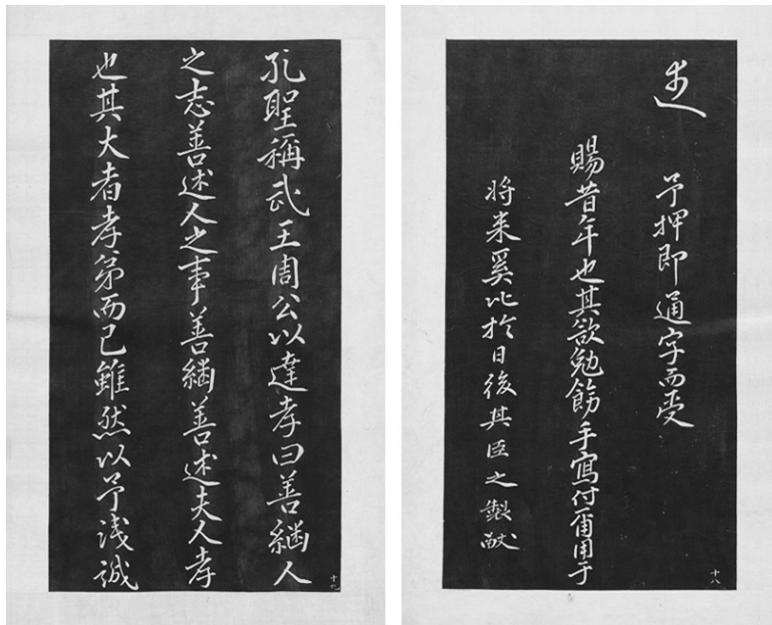
삽도2-〈김전영지(金濶令旨)〉, 1719년(숙종 45), 53×72cm, 해풍김씨(화성시향토역사박물관).

19) 단서철권(丹書鐵券): 西漢 高祖가 공신의 지위와 복록을 명시한 증서로 철판에 새겨 붉게 쓴 『漢書』, 『漢高帝紀』. “又與功臣, 剥符作誓, 丹書鐵券, 藏之宗廟.”

20) 『능허관만고』 권6 「題券」 辛巳 다음의 「又題」 “龍飢蛇救, 又有雲從返淵, 大穴報厚. (疑有缺誤)”도 그러한 영지의 문구였다고 짐작된다.

21) 《훈유사편》은 刻石 22매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전하며 이를 찍은 摄帖도 몇몇 전한다. 이완우, 『영조어필』(수원박물관, 2012), 158~175쪽 참조.

22) 『中庸』. “子曰, 武王周公, 其達孝矣乎. 夫孝子,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也.”



삼도2-영조어제어필, 〈예압설〉 제1, 2면, 1743년 2월 30일, 石刻印本  
44.3×24.3cm 《訓諭四篇》帖 54.7×33cm, 수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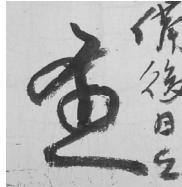
가볍이 오로지 孝와 梯이니 감히 소홀하겠는가? 또 이 속에 나의 뜻이 깊은데 뭐냐면, 내가 비록 덕은 박하지만 시국을 조절하고 신하들이 화합하니, 이것이 한 조각 굳은 마음이다. 네가 감히 한 터럭이라도 이것에 대해 소홀하겠는가? 네가 감히 한 터럭이라도 이것에 대해 소홀하겠는가? 大訓<sup>23)</sup>이 밝혀지어 國是가 크게 정해졌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효란 어버이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니, 이것이 달효이다. 어찌 한갓 나의 마음이리요 우리나라에 전하는 가법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며, 이 어찌 나 한 사람의 다행이리요 바로 큰 나무 같은 世臣들의 다행인 것이다. 이를 마음에 새겨 공경히 유념하고 따르라.<sup>24)</sup>

그날 영조는 관례를 맙은 빈(賓)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1682-1759)와 홍문관·예문관 제학, 예조 당상관을 불러 “열성의 어압에 ‘達’ 자가

23) 대훈(大訓): 1741년 영조가 경종 초년의 辛壬獄事를 誣告, 즉 거짓고발로 판정하고 당쟁의 폐해를 강조한 辛酉大訓. 『御製大訓』으로 간행·반포됨.

24) “[予] 予押即通字, 而受賜昔年也. 其欲勉飭, 手寫付爾, 用于將來. 奚比於日後其臣之製獻. 孔聖稱武王周公以達孝曰,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 善繼善述, 夫人孝也. 其大者孝弟而已. 雖然以予淺誠, 勉爾繼述, 其豈身教. 而堯舜文武方冊載焉, 卽爾先師, 我朝傳法, 惟孝惟弟, 其敢忽乎. 且此中予意深焉, 何則, 予雖涼德, 調齊時象, 同寅協恭, 是一片固心. 爾敢一毫忽於此哉. 爾敢一毫忽於此哉. 大訓昭焉, 國是大定. 人子之孝, 以父心爲己心, 是達孝也. 豈徒予心, 受訓于傳法, 是豈予一人之幸, 卽喬木世臣之幸也. 銘此于心, 鈸體欽遵.”

표3-영조가 써준 예압과 평양밀행 때의 장현세자

영조어필 睿押	장현세자 睿押	
睿押說 1743. 2. 30	李大心令旨 1761. 4. 8	李大心書札跋 1761. 4. 8
		

있는가 없는가? 경묘(경종)의 어압은 ‘靜’ 자였고 선왕(숙종)의 어압은 ‘守’ 자였는데 현묘(현종) 이상은 어떤 글자였는지 모르겠다. 어압의 글자를 비록 선조들과 같이 쓰더라도 의리에 해는 없지 않은가?” 물었고 여러 신하가 “그렇습니다” 하자 영조는 “동궁의 압자를 ‘達’ 자로 정한 것은 통달(通達)의 뜻을 취한 것이다. 비록 흔히 쓰는 문자이나 피할 필요는 없겠다” 하였다.<sup>25)</sup> 즉, 영조는 공자가 무왕·주공을 달효(達孝)라 부르며 아버이의 뜻과 일을 계술(繼述)한 것과 조선의 선왕들이 전해준 가법으로서 효제(孝悌)를 마음에 새겨 따르라면서 자신의 ‘通’ 자 어압과 왕세자의 ‘達’ 자 예압을 효제의 뜻으로 연결시켰다. 이 영지에서 장현세자는 부왕이 내려준 예압을 그대로 따라 썼다(표3).

### 3) <이대심서찰발(李大心書札跋)>(도10)

이 발문은 1761년 4월 8일에 평양에서 장현세자가 유학 이대심을 만나 영지를 써주자 이대심이 황송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답찰(答札)로 올렸고, 이에 세자가 그 뒤쪽 여백에 훗날의 만남을 대비하여 그날의 인연을 쓰고 압자를 써서 돌려준 것이다. 이대심의 서찰에서 “오늘 뜻밖에 학가(鶴駕)가 임하심을 뵈옵고 아울러 보배로운 글씨까지 받드니 …….”라 했고 세자의 발문에서 “특별히 16자를 써서 그저 오늘의 행색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므로 ‘오늘’은 16자 금권의 영지를 써준 1761년 4월 8일이었다.

25) 『영조실록』 19년 2월 30일. “命招領議政金在魯及弘藝文提學禮曹堂上，問曰，列聖御押有達字否乎？景廟御押爲靜字，先朝御押爲守字，顯廟以上不知爲何字。御押之字，雖與祖先同用，無害於義否？諸臣曰，然矣。上曰，東宮之押以達字爲定者，取其通達之意，而雖行用文字，押則不必諱矣。”

謹忝宗班之列，不近耿光。今日幸瞻，鶴駕之臨，兼奉寶墨，惶惑無地。反浦六里居李大心伏地拜上。

此則平壤居李生大心之書也。余近日少暇，欲觀箕城之繁華，兼伸超海之雄心。暫屈芻仗，倣古康衢，幸逢此生，非他則穆廟之後裔花義君之十一代孫。他鄉遇親戚，寔非偶然。特書十六字，聊表今日之行色。此李生之迴答也。書于右以備後日之見焉。重

삼가 實職의 반열에는 끼었으나 耿光<sup>26)</sup>을 가까이 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뜻밖에 鶴駕<sup>27)</sup>가 임하심을 뵈옵고 아울러 보배로운 글씨까지 받드니 황감함을 비길 바 없습니다. 반포 6리에 사는 이대심이 옆드려 절하며 올립니다.

이것은 평양에 사는 이대심의 서찰이다. 내가 근일에 좀 겨를이 나 箕城의 繁華함을 보며 超海의 雄心<sup>28)</sup>을 폄고자 했다. 잠시 의장을 굽히고 옛 康衢<sup>29)</sup>를 모방하다가 뜻밖에 이 사람을 만나니 다른 아닌 穀廟(宣祖)의 후예이요 花義君의 11대손이다. 타향에서 친척을 만나니 참으로 우연이 아니다. 특별히 16자를 써서 그저 오늘의 행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李生의 회답이다. 그 옆에 써서 훗날의 만남에 대비한다. 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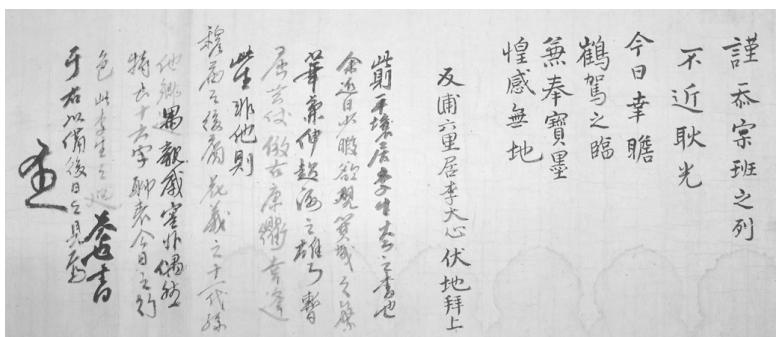
이 발문은 『능허관만고』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내용 중에 기성(箕城)，즉 평양에 간 목적을 밝히고 있다. 평양의 변화한 거리를 보며 북해를 뛰어넘는 웅대한 마음을 폄고자 잠시 의장을 굽혀 옛날 姚(堯) 임금이 큰 길로 나가 민정을 살피던 고사를 따랐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평양을 구경하고 놀고 싶어 민정시찰을 이유로 댄 것이다. 장현세자의 평양밀행에 관한 여러 추측이 있는데 일단 이 발문은 그 목적을 직접 밝힌 유일한 예필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또 말미의 예압은 위 〈이대심영지〉의 것과 함께 지금까지 알려진 유이(唯二)의 예이다.

26) 경광(耿光): 先朝의 밝은 德이나 임금의 威儀. 周公이 成王에게 “文王의 밝은 빛을 보시고 武王의 큰 공력을 드날리소서”라고 한 말에서 나옴. 『書經』「立政」, “以觀文王之耿光, 以揚武王之大烈” 여기서는 장현세자를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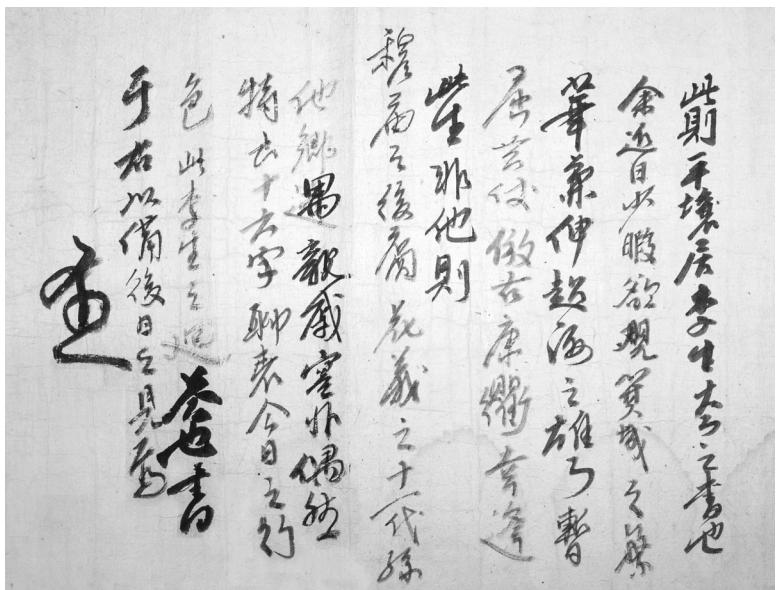
27) 학가(鶴駕): 임금이나 왕세자의 車駕 즉 수레. 『列仙傳』「王子喬」에 周 灵王의 태자 晉이 白鶴을 타고 가 緇氏山 꼭대기에 머물렀다고 함.

28) 초해(超海): 大人·志士가 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挾山超海) 듯한 웅대한 마음. 『舊唐書』 권187上, 列傳 第137上 忠義 上. “王義方, 泗州漣水人也. 少孤貧, 事母甚謹, 博通五經 [...] 義雖挾山超海之力, 望此猶輕, 回天轉日之威, 方斯更劣, 此而可恕孰, 不可容…….”

29) 강구(康衢): 四通八達의 변화한 거리. 姧 임금이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지, 백성이 자신을 임금으로 원하는지 알고자 微服으로 강구에 나가니 아이들이 〈蒸民歌〉를 불렀다고 함(『列子』 권4, 仲尼 제4).



도10-〈李大心書札과跋文〉, 1761년 4월 8일, 33×78.5cm, 장서각.



도10-1-장현세자, 〈李大心書札跋〉, 1761년 4월 8일, 가로 약 42cm.

#### 4) 〈왕세자분부(王世子分付)〉(도11)

이것은 1761년 4월 9일 장현세자가 평양부 동면 율사동에 사는 통덕랑(通德郎)<sup>30)</sup> 서필영(徐必榮)의 자손에게 잡역(雜役)을 부과하지 말라는 분부이다. ‘잡역’이란 조선시대 양인(良人)이 해마다 치르는 부역(賦役) 이외에 일시로 동원되어 노동력을 내는 잡세(雜稅)를 말한다. ‘분부’란 왕을 비롯하여 대왕대비 · 왕대비 · 왕세자 등 웃전의 명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왕의 경우 중요한 일은 승정원에서 출납했으나 사소한 일은 액정서(掖廷署) 사알(司謁, 정6품)이나 내시부(內侍府) 승전색(承傳色, 종4품)이 전달했는데 구전(口傳) 또는 어필로 전했으며, 왕세자의 경우 세자시강원 관원이나 세자궁(世子宮), 즉 동궁 소속의 승언색(承言色)이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서필영에게 내린 이 분부의 암자(押字)는 앞서 보았던 장현세자의 ‘達’자의 예암이 아니다.

行次分付教是內, 平壤府東面栗寺洞居通德郎徐必榮子孫, 勿侵雜役事.

辛巳四月初九日.

行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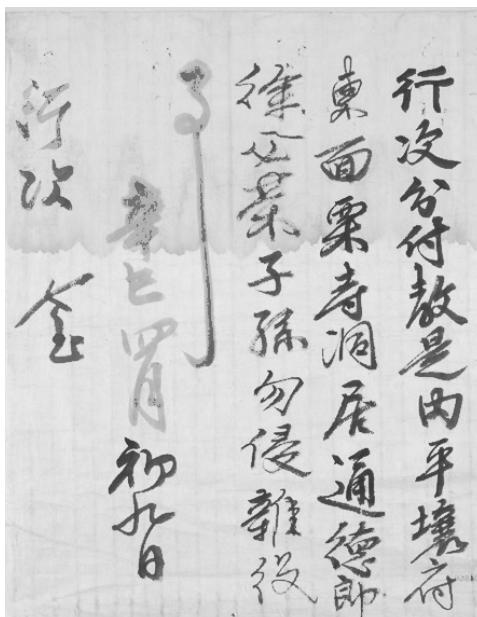
행차께서 분부하심에 평양부 동면 율사동에 사는 서필영 자손에게 잡역을 부과하지 말 것.

신사년 4월 초9일.

행차

위 첫째 줄의 ‘…… 教是內’는 조선시대 문서에 흔히 쓰이는 이두로 ‘…… 하시내(하심에)’의 뜻이며 넷째 줄의 ‘…… 事’는 ‘…하는(할) 일(것)’, 즉 문서 말미에 일간을 나타내는 투식이다. 따라서 이 분부는 행차하신 왕세자의 분부를 받들어 아랫사람이 작성한 것이므로 말미에 왕세자가 아닌 수행자가 암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평양밀행에 따라간 신하는 중관(中官), 즉 세자궁 내시 박문홍(朴文興)과 김우장(金佑章)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분부 말미의 암자를 썼을 것이다. 그들은 그해 9월 말 평양밀행이 영조에게 발각되자 의금부 엄형(嚴刑)을 일차 받은 뒤 무기한으로 정배(定配)되었다가 이듬해 1762년 윤5월 14일 장현세자가

30) 통덕랑(通德郎): 조선시대 정5품 文官 품계. 通善郎 위, 朝散大夫 · 朝奉大夫 아래. 1865년(고종 2)부터 文官 · 宗親 품계로 함께 사용함.



도11-장현세자, 〈王世子分付〉,  
1761년 4월 9일,  
47.5×39.5cm, 장서각.

폐서인이 된 다음날 풀려났다.<sup>31)</sup>

그런데 이 분부의 먹색은 부분마다 달라 단번에 쓴 것이 아닌 듯하다. 즉, “行次分付 [...] 勿侵雜役”과 “初九日”은 먹색이 짙은 반면 “事」辛巳四月”은 열게 번졌으며 마지막 줄의 “行次(押字)”는 중간 정도의 먹색이다.

이 분부가 장현세자의 예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예제예필 시문고와 비교해보았다(표4). 특히 1762년 4월 29일의 〈왕세자문비(王世子問批)〉(삼도4)는 서연(書筵)에서의 아침 강학 때 장현세자가 이해하지 못한 문구가 있어 세자시강원 보덕(輔德) 이덕해(李德海, 1708-?)와 설서(說書) 권정침(權正忱, 1710-1767)에게 친필로 질문지를 써서 내린 것인데 비교 대상으로 매우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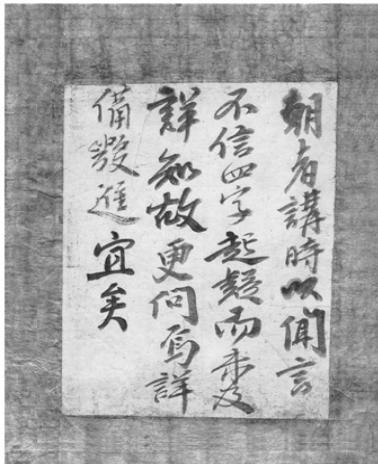
31) 『승정원일기』 영조 37년(1761) 9월 22일. “李翼元, 以義禁府言啓曰, 中官朴文興·金佑章, 竝令該府嚴刑一次後, 金佑章海南縣, 朴文興濟州牧大靜縣, 勿限年定配事, 命下矣. 金佑章·朴文興竝嚴刑一次後, 以傳教內辭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영조 38년(1762) 윤5월 14일. “鄭光漢, 以義禁府言啓曰, 定配罪人中官結城縣吳命來, 丹城縣吳俊謙, 機張縣李夢良, 黑山島朴文興, 巨濟府吳允恒·徐泰恒, 海南縣金佑章, 諸玉堂臺臣投界罪人盈德縣李宜老, 機張縣金鍾正, 東萊府朴帥海, 長鬱縣洪趾海, 清河縣南玄老, 興海縣洪橴, 盈海府李得培, 巨濟府李善建等, 放送事, 命下矣. 竝爲放送之意, 分付, 各該道臣, 何如? 傳曰, 允.”

왼쪽으로 기운 짜임, 느슨한 운필, 변방과 머리·받침의 필사 습관이 서로 흡사하여 〈왕세자분부〉를 장현세자 예필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사도세자는 제일 먼저 먹색이 짙은 부분을 쓴 뒤 “事 辛巳四月”을 보충해 문서 형식을 갖추었고, 마지막 줄의 “行次”는 첫째 줄의 그것과 전혀 필치가 달라 수행인이 추서하고 압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하튼 이 분부는 위의 〈이대심영지〉, 〈이대심서찰발〉과 함께 통상적인 과정을 통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왕세자가 직접 쓰고 말미에 왕세자나 수행자가 압자했다는 점에서 문서 성격을 떤 보기 드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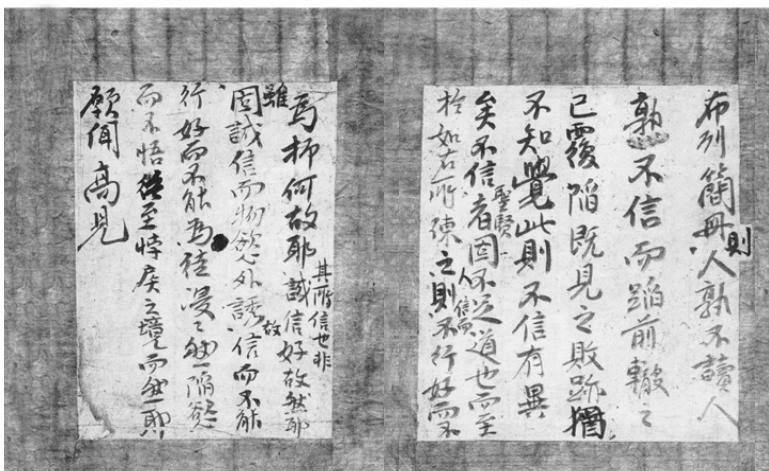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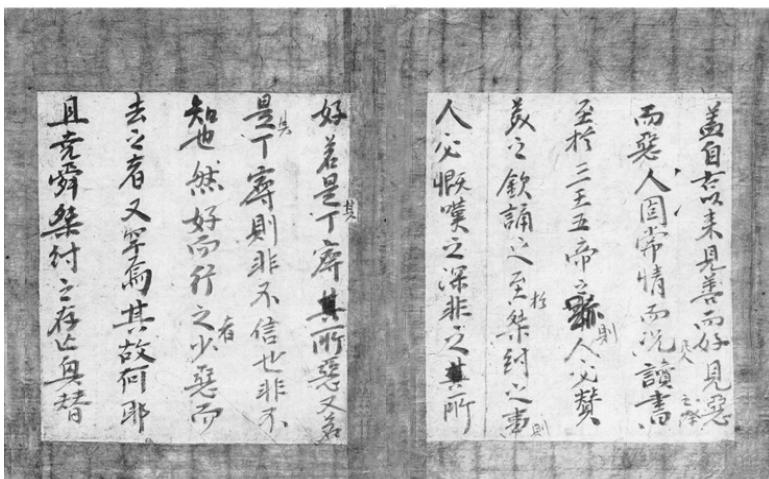
표4- 〈왕세자분부〉와 1756-1762년 장현세자 예필의 비교

王世子分付	비교 1	비교 2	비교 예필, 작성시기
			<p>1. 賦黃錫著 1758. 2. 15 賜崔善起 1758. 봄</p> <p>2. 王世子問批 1762. 4. 29</p>
			<p>1. 贈人 1756 賜崔善起 1758. 봄</p> <p>2. 李大心書札跋 1761. 4. 8 王世子問批 1762. 4. 29</p>

王世子分付	비교 1	비교 2	비교 예필, 작성시기
通德	遷	道	1. 贈人 1756 戲贈坡平主人 1761. 4. 3 2. 王世子問批 1762. 4. 29 李大心書札跋 1761. 4. 8
父崇	父	父	1. 贈人 1756 2. 王世子問批 1762. 4. 29
子孫	子孫	孫	1. 戲贈坡平主人 1761. 4. 3 2. 李大心令旨 1761. 4. 8 李大心書札跋 1761. 4. 8
勿後	鶴	物	1. 李大心書札跋 1761. 4. 8 2. 王世子問批 1762. 4. 29
辛巳胃初吉	壬辰胃初吉	辛巳胃初吉	1. 戲贈坡平主人 1761. 4. 3 2. 李大心令旨 1761. 4. 8



십도4-장현세자, 〈王世子問批〉,  
1762년 4월 29일, 20×16cm,  
첩장 30×23.5cm, 봉화 權鼎燮  
舊藏(국사편찬위원회 시전).



## 5) 〈가학헌제서(駕鶴軒題書)〉(도12)

이 제서는 장현세자가 1761년 4월 10일 이대심에게 헌호(軒號)를 써준 것이다. ‘가학(駕鶴)’은 ‘학을 타다’라는 뜻이다. 이를 전 4월 8일 이대심이 세자에게 올린 답장 서찰에서 “오늘 뜻밖에 학가(鶴駕)가 임하심을 뵈옵고”라고 했듯이 ‘학가’는 임금이나 왕세자의 거가(車駕), 즉 수레를 뜻한다. 이러한 글자 뜻으로 보면 ‘가학헌’이란 학을 탄 신선, 즉 장현세자가 납섰던 집의 뜻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760년(庚辰) 가을 장현세자가 자신의 진영(眞影) 초본에 관해 재미삼아 쓴 글이 전한다.<sup>32)</sup>

是秋自湯泉還駕路，出水原防禦營，登府治後阜，計前行，凡三臨。是行之後圖真，乃用所御之服色，草成有題。

이번 가을 湯泉(온천)에서 돌아오는 가마 길에 水原 防禦營으로 나아가 府治 뒤편 언덕에 올랐는데, 전에 행차한 것을 세보니 무릇 3번 왔다. 이번 행차 뒤에 眞影을 그렸는데 (수원에) 나갔을 때의 복색을 사용했다. 초본이 완성되어 제한다.

駕馭三山之鶴	三山 <sup>33)</sup> 의 학을 타고 물면서
潛藏九池之龍	九池 <sup>34)</sup> 의 용을 잡겨 감추네.
孰是奔秦一世之智勇	누가 일세의 지혜와 용기를 달려가 아뢰며 <sup>35)</sup>
那能開拓萬古之心胸	어찌 능히 만고의 심흉을 열어 제치겠는가.



도12-장현세자, 〈駕鶴軒題書〉, 1761년 4월 10일, 21.5×39.5cm, 장서각.

32) 『능허관만고』 권 6 頁, 「戲題真草并小序」。是秋自湯泉還駕路, 出水原防禦營, 登府治後阜, 計前行, 凡三臨。是行之後圖真, 乃用所御之服色, 草成有題。駕馭三山之鶴, 潛藏九池之龍, 究是奔奏一世之智勇, 那能開拓萬古之心胸。」

33) 삼산(三山): 蓬萊 ·瀛洲 ·方丈의 三神山. 劉向의 『列仙傳』에 나옴.

34) 구지(九池): 중국 甘肅省 成縣 서쪽의 九池山. 산 위에 水池가 있어 그렇게 불림.

35) 분주(奔奏): 신하가 열성으로 왕의 덕을 알리고 왕의 명성을 선양하는 것

장현세자는 앞쪽 구절에서 삼신산(三神山)의 선학(仙鶴)을 타고 물며 드높은 경지를 보면서도 세상 위로 오를 때까지 자신을 구지산(九池山) 못 속에 잠룡(潛龍)으로 감추고 있으며, 뒤쪽 구절에서 어느 누가 한 시대의 지혜와 용기를 임금에게 열성으로 아뢰며 어떻게 오랫동안 간직해 온 자신의 속마음을 열어 보이겠냐고 반문하였다. 이처럼 ‘가학’에는 학을 타고 어디론지 날아가고픈 장현세자 밀년의 심경이 담겨져 있는 듯하다. 『능허관만고』 권1 「희증파평주인」 바로 앞에 「서경증인(西京贈人)」과 그 앞에 「한강범주(漢江泛舟)」 신사(辛巳) 칠언절구가 실려 있는데, 한강에 배 띄워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심정과 평양을 바라보는 들뜬 심상이 잘 나타나 있다.

「漢江泛舟」 辛巳 「한강에 배 띄우며」 신사년(1761)

紫閣峯前漢水漣  
碧林青草澹無邊  
順流直欲荊門去  
千里荊門日杳然

자각봉 앞에 한강물이 잔잔하고  
푸른 숲 파란 풀이 끝없이 담담하네.  
순풍 타고 곧바로 荆門<sup>36)</sup>에 가고픈데  
천리 형문의 길에 해가 아스라하네.

「西京贈人」 「평양에서 어떤 이에게 주다」

翩然飛鶴過西洲  
勝似江南第一州  
借問朝天何處是  
一雙麟馬立江頭

훨훨 날아가는 학이 서쪽 물가를 지나니  
강남 제일의 고을인 양 빼어나구나.  
문노라 朝天石<sup>37)</sup>이 어느 곳이더냐?  
한 쌍 麒麟馬가 강가에 서 있구나.

세자가 평양에서 돌아온 뒤 성균관 대사성 서명웅(徐命膺, 1717-1787)이 세자의 관서행(關西行)을 논박하며 상소했으나 영조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뒤 몇 달 동안 신하들이 마음 줄이며 침묵했으나 결국 그해 9월 20일 영조가 5, 6월 승정원일기를 가져다 보던 중 세자의 관서행을 알게 되었다.<sup>38)</sup> 이에 영조는 이튿날 9월 21일 서행에 따라간

36) 형문(荊門): 중국 湖北省 荊州의 산. 長江 가에 있는데 형세가 험난하여 예로부터 巴蜀 과 荊吳 사이의 水路 요새. 字意 그대로 '가시나무 문(사립문)'을 뜻하기도 함.

37) 조천석(朝天石): 고구려 東明王이 麒麟馬를 타고 浮碧樓 아래 굴에 들어갔다가 땅에서 朝天石(하늘에 조희하는 돌) 위로 나와 승천했다 함.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 京都 上, 西京 부분.

38) 『영조실록』 37년(1761) 9월 20일. “上命入五六月日記, 命承旨李顯重考見言事, 上書以奏, 顯重曰, 無大段言事矣. 上曰, 無之乎? 顯重曰, 無之矣. 上, 蘋聲曰, 明無之乎? 顯重避席涕泣曰, 咫尺前席, 臣果欺罔矣. 若是可見之書, 則殿下必已見之, 而未見者, 以殿下

자는 누구이고 궐내에 머문 자는 누구인지를 좌의정 홍봉한에게 물었고, 홍봉한이 세자궁에 가서 질문하자 세자는 사실대로 적어 부왕에게 아뢰었다. 영조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홍봉한을 면직시킨 뒤 임금에게 언사(言事)한 글을 숨겼다는 이유로 승지 이정철(李廷喆) · 송형중(宋瑩中)을 파직하고, 그때 입직한 춘방(세자시강원)의 보덕 유사흠(柳思欽), 문학 정창성(鄭昌聖), 겸문학 엄인(嚴璘)을 사직시켰으며, 궁에 남은 중관 서태항(徐泰恒) · 오윤항(吳允恒)을 거제부에 무기한 정배하고 서행을 따라간 중관(내시) 박문홍 · 김우장을 사헌부로 하여금 일차 엄형을 가한 뒤 각각 해남현과 대정현에 무기한 정배했다. 또 세자가 돌아왔던 4월 22일에 입직한 별감 행수(行首)와 차비대령 별감들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일차 엄형을 가한 뒤 양남(兩南) 섬으로 나뉘 정배하고 그 나머지 별감도 곤장 100대를 가하며, 밀행 기간에 세자 행세를 한 중관 유인식(柳仁植)은 잔인하게 죽었으므로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훌전(恤典)을 거행하게 했다.<sup>39)</sup>

또 9월 22일 영조는 창덕궁에 나아가 숙종어진을 봉안한 진전(眞殿)의 문밖에 부복하며 세자가 서행한 일을 아뢰었다. 이어 선인문(宣仁門)에 나아가 중관 박문홍을 형추(刑推)하고 흑산도로 압거(押去)시켰으며 4월 2-22일에 창덕궁 분조(分朝)에서 근무했던 심발(沈撥) 등 승지 8명을 모두 사직시켰다.<sup>40)</sup> 이틀 뒤 9월 24일 영조는 이미 면직시킨 사부(師傅)와

---

不必見也。殿下何不考出而見之乎？上命讀之。顯重曰，殿下亦何忍一朝驅入於如此之地？臣雖死，不敢讀矣。上遂上日記，見徐命膺書，稱善久之。顯重曰，今日臣子之隱而不告於殿下者，非忠也，揚而告於殿下者，亦非忠也。上曰，叩馬之議，郊迎之論，發諸何人乎？顯重曰，纔經草土，未及聞知，下詢股肱之臣則可知也。如臣疎遠之微賤者，何敢仰達乎？上曰，其豈不知耶？

39) 『영조실록』 37년 9월 21일. “特免洪鳳漢相職。上謂左議政洪鳳漢曰，昨見徐命膺書，此必陟降導予也。都城十里之地，予已知其出入，而豈料作千里之行乎？仍命注書，持入五月日記，親自搜閱，至尹在謙書，上曰，又有此矣。三道道臣及具允鈺·李永暉事，固是挾雜之論，而新構突兀路傍云者何也？鳳漢曰，臣當詣東宮，仰質還奏。鳳漢入對東宮曰，自上取覽徐命膺·尹在謙書，始知邸下之西行，及作舍東郊，而下詢作舍時捐出者何財，董役者何人，西行時從行者誰也，留闕者誰也。今邸下錄以奏之，直以待罪之意，聞于大朝似宜矣。令曰，東郊草舍，以朔紙，爲中官朴文興營造，而臺書出後，卽令毀撤。西行則登程於四月初二日，復路於二十二日，而留闕中官柳仁植，今已致弊，從行中官，只朴文興·金佑章也。聖教之下，何敢一毫掩覆耶？仍令承宣，錄出一通，仰奏於大朝。鳳漢歸而詳奏曰，今日事，罪在臣身。先斥臣，以謝上下。上特命免相。上以言事書掩置，承旨李廷喆·宋瑩中，竝命罷職不敍，其時入直春坊輔德柳思欽·文學鄭昌聖·兼文學嚴璘，并施削職之典，中官徐泰恒·吳允恒，命勿限年巨濟府定配，朴文興·金佑章，令該府嚴刑一次，佑章海南縣，文興大靜縣，勿限年定配。四月二十二日入番別監行首及差備侍令別監，令該曹嚴刑一次，兩南海島分配，其餘別監，亦令該曹決杖一百，柳仁植其涉殘忍，令該廳恤典舉行。”

상신(相臣) 외에 서명웅·윤급(尹汲) 등의 빈객(賓客) 4명과 평양밀행에 대해 말하지 않은 사간원 헌납 흥지해(洪趾海)와 정언 윤면동(尹冕東)을 각각 강진현과 기장현으로 귀양을 보냈다.<sup>41)</sup> 이에 9월 24일부터 세자가 시민당(時敏堂)에서 대죄(待罪)하면서 내의원 진찰도 거부하고 식사도 물리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자 영조는 10월 4일 영의정 홍봉한의 청에 따라 종묘에서 동향대제(冬享大祭)를 마친 뒤 세자에게 타이르는 글을 써서 전했다. 그 뒤 10월 9일 왕세자가 경희궁에 나아가 영조를 뵈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sup>42)</sup>

그러나 이듬해 5월 22일 액정서 별감 나상언(羅尙彦)의 형으로 윤급의 집사였던 나경언(羅景彦)이 내시들이 불궤(不軌)한 모의를 있다고 형조에 고변하자 그를 취조하는 국청이 태복시에 설치되었고, 영조가 친국(親鞫) 할 때 나경언이 옷솔기에서 흥서를 내놓으며 세자의 허물 10여 조를 고했다. 이에 영의정 홍봉한이 동궁에게 소식을 전하자 세자는 홍화문(弘化門) 밖에 나아가 대명(待命)했다. 영조는 세자를 불러 크게 책망하기를 “네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들였으며,<sup>43)</sup> 서로(西路)에 행역하고 북성(北城)으로 나가 유람했는데, 이것이 어찌 세자로서 행할

40) 『영조실록』 37년 9월 22일. “上詣昌德宮，俯伏眞殿門外，口奏西行事，命承旨春坊，往復於小朝，仍御宣仁門，刑推朴文興。教曰，文興罪關胥壞，其宜亟正邦刑，以謝中外，而非爲渠也，意蓋深矣，既捧結案，特爲參酌，已施嚴刑二次，依前配所，黑山島即爲押去。自四月初二日，至二十二日，昌德宮坐直承旨沈墮·俞漢蕭·俞彥民·李秀得·鄭存謙·李心源·金尙重·李永暉，竝命削職，以尹東逼爲都承旨，李彝章爲大司憲，金元行爲執義。”

41) 『영조실록』 37년 9월 24일. “上御景賢堂，藥房入診。教曰，傅相既免，況賓客乎？徐命膺·尹汲·李鼎輔·徐志修并削職，再昨行公不言臺臣，爲先嶺沿投界。寃予之過，自今減膳，以謝陟降。溫陽隨行首醫，亦命削職。又下教曰，其時提調問候於何處？李益輔·鄭弘淳，與其時承旨，一體捧徽旨。又教曰，今番文興，以彥廢闢堅，幾傾宗國。其君雖參酌，以已結案之人酌處，則臺臣其當爭執，尙今寥寥，事之無據，莫此爲甚，獻納洪趾海，康津縣投界，正言尹冕東，機張縣投界。”

42) 『영조실록』 37년 10월 2일. “上御景賢堂，藥房入診。領議政洪鳳漢曰：‘小朝露坐輟膳，雖變爲減膳，而臣等焦迫罔措之忱，不敢暫弛。伏願殿下，指示臣等爲人之道。’上曰，予於未入丹門之前，遽有方便之命，則陟降必俯視矣，予豈爲此乎？鳳漢曰，然則姑俟大享後，臣等當復仰請於小朝乎？上許之。”；10월 4일, “上親行太廟冬享，伏於階下口奏，仍御于東神門外，命承旨書諭東宮文，使春坊問安官李鑑衡，傳于東宮。”；10월 9일. “王世子詣慶熙宮，以黑笠道袍，乘小輿，出宣仁門，藥房分提調李得宗，請診候，令曰，雖承進見之命，追念往事，尙多悚蹙，何可許診也？至慶熙宮紅馬木外，徒步以入，俯伏於顯謨門外，上令吏官，問其服着，又使內侍，命進見。王世子對以不敢入，上使領相洪鳳漢，勉諭以入，教曰，元良旣進見，常參次對胄筵，依例爲之。教曰，元良回時，顯謨門乘輿，興化門乘輦。”

43) ‘왕손의 어미’는 恩全君 李瀱(1759-1777)과 清瑾縣主(1758-1835)를 낳은 守則朴氏 (1739-1761, 氷愛)이며, ‘여승’은 안암동 여승으로 머리를 기르고 입궁한 良娣假仙 (?-1762)이다.

일이냐? 사모를 쓴 자들은 모두 나를 속였으니 나경언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왕손의 어미를 네가 처음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빠진 듯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마침내는 죽였느냐? 그 사람이 아주 강직했으니 반드시 너의 행실과 일을 간하다가 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또 장래에 여승의 아들을 필시 왕손이라 일컬으며 데리고 들어와 문안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날 나경언은 대신들의 건의로 복주(伏誅)되었다.<sup>44)</sup>

이후 세자는 시민당에서 계속 대명(待命)했는데 당시 영조는 세자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지나쳤음을 후회하며 남은 희망이 없음을 털어놓기도 했다.<sup>45)</sup> 그러던 중 다음 달 윤5월 11-12일 밤중에 세자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칼을 들고 경화궁으로 가려다 도중에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마침내 이튿날 윤5월 13일 생모 영빈이씨가 세자에 대한 대처분을 주청하자 영조는 정성왕후의 혼전(魂殿)인 휘령전(徽寧殿)에 나아가 예를 마친 뒤 세자에게 자결하란 명을 내렸다. 그러나 춘방 신하들의 만류로 자결하지 못하자 영조는 그를 폐위시켜 서인으로 삼고 깊은 곳에 가두었다. 그 다음날 14일 영조는 세자를 종용하여 나쁜 일을 저지른 내시 박필수(朴弼秀)와 여승으로 입궁한 가선(假仙) 그리고 서읍(西邑)의 기녀 5명을 참수시키고, 춘방 관원으로 세자를 구호하던 한림 윤숙(尹塾)과 임덕제(林德躋) 등을 유배시켰으며, 동궁의 잡물(雜物)을 선인문 밖에서 모두 불태우게 했다. 또 15일에는 경화문(景化門)에 나아가 정무에 복귀하는 교시를 반포했다. 무더운 여름 몇 날을 뒤주에 갇혔던 왕세자는 그달 21일에 흥서(薨逝)하였다.<sup>46)</sup>

44) 『영조실록』 38년 5월 22일. “上命東宮入侍, 洪鳳漢曰: 東宮不可與罪人同庭, 宜撤下罪人。上從之。有頃世子以笠袍, 入伏庭中, 上閉戶不見者良久, 承旨啓于戶外。上推牕大責曰, 汝搏殺王孫之母, 引僧尼入宮, 西路行役, 北城出遊, 此豈世子可行之事? 着帽之漢, 皆欺我, 微景彥, 予何得聞? 王孫之母, 汝初甚愛, 以至溺井之境, 何乃竟殺乎? 其人頗剛直, 必諫汝之行事, 由是見戮。且將來僧尼之子, 必稱王孫, 入來問安矣。如此而國不亡乎? 世子不勝其憤, 請與景彥面質。上責曰: 此亦亡國之言。代理儲君, 豈與罪人面質乎? 世子泣對曰: 此果臣之本病火症也。上曰: 寧爲發狂, 則豈不反勝乎? 命退出, 世子出外, 待罪于禁川橋上…….”

45) 『영조실록』 38년 윤5월 1일. “上曰, 昨年恭默閣命入侍, 則稱以足疾, 前領相諭而入侍, 行步如常矣。其資品近於生知, 故予初甚愛, 老宦權聖徵, 諫予溺愛, 當時予意以謂濫矣。到今思之, 悔不用其言, 使長其習也。昔日故相李恒福, 兒時迂闊, 竟爲賢相, 此則無復餘望矣。”

46) 『영조실록』 38년 윤5월 14일; 윤5월 15일; 윤5월 21일.

### III. 정조의 장현세자 예제예필 수집과 편집

#### 1. 장현세자 예제예필(睿製睿筆)의 수집

장서각의 장현세자 예필진적은 대부분 일반에게 내려졌던 것들이다. 1757년의 〈홍릉지문초〉는 미상이지만 이를 제외한 1756년·1758년·1761년의 시문과 11점은 모두 장현세자가 측근이나 일반인에게 이어저런 연유로 써준 것들로 정조연간에 헌납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조(正祖)는 1776년 3월 5일 영조 승하 후 3월 10일 경희궁 숭정문에서 즉위한 뒤 모친 혜빈홍씨를 왕대비로 높여 혜경궁이라 칭하고, 세손빈 김씨(1753~1821, 孝懿王后)를 왕비로 책립했으며, 3월 19일에는 효장세자(孝章世子)와 효순현빈(孝純賢嬪, 1715~1751)을 진종(眞宗)과 효순왕후(孝純王后)로 추존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선친 사도세자에게 '장현(莊獻)' 이란 존호를 추상하고 부친의 묘소와 사당(垂恩墓/廟)을 영우원(永祐園)과 경모궁(景慕宮)으로 격상시켰다.<sup>47)</sup>

이후 정조는 선친의 예제예필을 꾸준히 수집해간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조 후년의 『승정원일기』에 장현세자 예필 헌납자에 관한 기록이 주목된다. 그중 1796년 3월 22일에 과거 경진년(1760)에 장현세자가 치료차 온양에 거동할 때 따라갔던 수가인(隨駕人) 중에 누락된 사람을 가려내라 엄하게 타이른 일로 한성부에서 별단(別單)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정조는 장현세자 예필 헌납자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과 자손에게 작상(爵賞)을 명한 바 있다.

…… 또 생각하건대 이 사람은 陪吏였던 듯한데 과연 그렇다면 草記하라. 그중 가선대부 康聖彥은 수여받은 필적을 일찍이 와서 바친 사람인데, 서로가 어려웠고 또 가벼이 처리한 듯하다. 비록 까닭 없이 收用할 수는 없어도 지금의 이 별단을 어찌 헛되이 지나칠 수 있는가?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單付(관리 선발에 단일후보 추천)하고 追榮(추증)을 기다려 減下(현직 관원 수를 줄임)하라. 그의 아들은 병조판서로 하여금 胥吏 정원을 기다려 호구책으로 삼게 하라.

이 때문에 생각컨대 평양의 咸戴一은 공로가 많아 대대로 도와주는 뜻이 있어 필적을 하사받았던 것인데, 그 사람이 근래 무슨 일을 하며 아들과 손자가 任役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맡아보는지 道臣에게 조사 보고하게 하라. 같은 평양부의 李大心은

47) 그 뒤 1899년(광무 3) 11월 莊宗으로 추존되고 12월 莊祖懿皇帝로 추존되었다.

간 곳과 임역 명칭을 또한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라.

장단 오목리의 金聖集의 공로는 극히 심상하지 않고 입은 恩眷 또한 상격에서 벗어나니, 그 사람의 생존 여부와 가문 여하를 도신으로 하여금 탐문하여 보고하게 하고 收用할지의 일을 생각하여 廟堂(의정부)으로 하여금 알리게 하라.

동지중추부사 黃錫耆는 일전에 비록 가자했으나 어제 소장한 한복을 만들어 살펴봄에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으니 병조판서로 하여금 그를 불러 원하는 바를 물어 초기하라…….<sup>48)</sup>

먼저 서울 서부의 강성언(康聖彦)은 궁관을 지냈던 사람으로 1787년 8월에 장현세자 예필을 헌납한 바 있었다. 정조는 1796년 3월 15일 온행수가인(溫幸隨駕人)에 대해 대대적으로 좌상할 때 가선대부(종2품)이던 그를 실직의 첨지중추부사(정3품 당상관)에 가자시키려 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처리되지 않자 정조는 3월 22일 온행수가인 별단의 누락자에 대한 언급과 함께 강성언의 일을 거론하고 그를 실직의 동지중추부사(종2품)에 단일후보로 부치고 그의 아들을 병조 서리에 충원하게 했던 것이다. 또 평양의 함대일(咸戴一)과 이대심에 대해 정조는 평안감사 김재찬(金載贊, 1746-1827)에게 그들의 자손과 경력을 속히 탐문하게 했고, 이에 3월 29일 보고서를 본 정조는 감사에게 함대일의 아들 전(前) 충장장(忠壯將) 함정희(咸正禧, 1758년생)와 한량 함정호(咸正祐, 1763년생)에게 말을 보내 속히 상경시키고 이대심의 아들 이몽표(李夢彪)를 특별히 수용(收用)하라 분부했다. 그중 좌리공신 동평군(東平君) 함우치(咸禹治, 1408-1479)의 후손인 함대일이 장현세자에게 하사받은 문적(文蹟)을 바치자 이에 감동했던 듯 정조는 4월 11일 함정희 형제를 만나본 뒤 형을 어영청 별군직에 특차하고 어영청 장군 집 근처에 집을 사주게 했으며 이조와 병조에 분부하여 수령이나 영장(營將) 중에 자리가 나면 차견(差遣)하게 했다. 또 아우는 도신을 시켜 향장관(鄉將官)에 먼저 차견한 뒤 차차 수용하게 했다. 이튿날 정조는 함정희를 동지중추부사에 단부시키고

48)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3월 22일. “……且思之，此人似是陪吏，如果然草記。其中嘉善康聖彦，有受賜筆跡之曾所來納者，難於彼此，且恐屑越。雖不得無端收用，此時此單，豈可虛過？實同知單付，待追榮減下。其子，令兵判待吏胥料寢，使之糊口。

因此思之，平壤咸戴一，效勞既多，至以世宥之意，有受賜之筆跡，其人近做何事，而子若孫，任役間，見帶何任何役，令道臣查問狀啓。同府李大心，去處及役名，亦令查問狀聞。長湍梧木里金聖集之效勞，極不尋常，所蒙恩眷，亦出常格，其人之生存與否，家閥如何，令道臣，探問狀聞，以爲收用之地事，即令廟堂行會。

同知黃錫耆，日前雖已加資，昨日奉考所藏翰墨，無以爲懷，令兵判，招問所願草記……。”

그 이튿날 경상우도 통영의 통우후(統虞候)에 보임시켰다.<sup>49)</sup>

또 장단의 김성집에 관해서는 경기감사 김문순(金文淳, 1744-1811)에게 그 자손과 경력을 속히 탐문하여 보고하게 했고, 이에 3월 23일 감사가 그를 본부 중군(中軍)에 보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아뢰자 3월 27일 그를 충장위장(忠壯衛將)<sup>50)</sup>으로 삼으라고 병조에 명하면서 그의 나이를 고려해 한 번 입직한 뒤 내려보내게 했다.<sup>51)</sup> 또한 황석기에 대해서는

49)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3월 29일. “以平安監司金載瓚狀啓，咸戴一·李大心子若孫有無及所經任役搜訪緣由馳啓事，判付內，咸正禧兄弟，令道臣爲先給馬起送而上來後，草記，李夢彪，亦令道臣別般收用事，分付兵曹爲良如教。” 4월 11일. “○李晉秀，以兵曹言啓曰，卽接平安前監司金載瓚移文，則依傳教，平壤人咸戴一子前忠壯將正禧，閑良正祐，給馬上送云，而正禧兄弟，今已上來矣，敢啓。傳曰，使之待令，可也。○丙辰四月十一日酉時，上御重熙堂。坐直承旨入侍時，右副承旨李晉秀，記事官柳遠鳴，記注官安經心，記事官吳泰曾，以次進伏訖。上曰，前忠壯將咸正禧入侍。(出榻教) 上曰，正禧兄弟，進立階上。教正禧曰，爾兄弟之年幾何？正禧曰，臣之年三十九歲，臣弟正祐之年，三十四歲矣。上曰，爾之曾經職名，詳奏，可也。正禧曰，曾爲訓鍊都監別軍官，因經巡將·忠壯將·恃寨僉使矣。上曰，爾之父名，進奏，可也。正禧曰，臣父之名，戴一矣。晉秀曰，聞正禧言，有其時日記持來者矣。上曰，捧入，可也。上覽訖。教正禧曰，爾家曾於何時，居于此土乎？正禧曰，臣之曾祖，自遂安移來此地，臣父因爲土校矣。上曰，爾於東平君爲嫡長孫乎？正禧曰，臣非嫡長，而嫡長則在於長湍地，見方爲月令忠義矣。上曰，今見故蹟，予心愴昔，無以爲懷，以汝爲別軍職，留住京中，恪勤奉職，可也。仍命正禧等先退。命書傳教曰，前忠壯將咸正禧，卽佐理功臣東平君禹治之後也。流落邱墓之鄉，近始得官職，而此人豈若此之人乎？尤爲奇異者，昔年陪從，在於此月此日，奉考受賜文蹟，予將何以爲懷，渠則以支派，雖不承襲封君，東平嫡長見在月令忠義云，只以渠先家世言之，亦是班族，何官不爲？咸正禧，爲先特差別軍職，守令營將中，待窯差遣事，分付兩銓，其弟正祐，令該曹，優給回糧下送，令道臣，先差鄉將官，以爲其次拔身收用之地事下諭于道臣。教晉秀曰，書報御將咸正禧，自御營廳，賈給家舍於御將家近處，隨事指揮，可也。晉秀曰，史官座目單子，兼春秋姓名，誤書捧納，臣不勝惶恐。上曰，當該注書，推考可也。仍命退，承史以次退出。” 4월 12일. “兵曹口傳政事，同知單咸正禧。”; 4월 13일. “兵批 [...]咸正禧爲統虞候……”

50) 忠壯衛는 임란 후 軍功者·納粟者·戰亡者の 자손으로 편제된 병조의 군대로 창덕궁 입직군사가 부족해 이들로 각門 과수에 충당하였다. 忠壯衛將(종2품/정3품) 3인을 두었는데 국왕이 대궐에 殿坐할 때 시위하며 종묘·사직 大祭 때 병조의 선발에 따라 門將에 참가하였다.

51)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3월 23일. “李肇源啓曰，傳教事體，至爲嚴重，無敢一字節談，而卽見京畿監司金文淳，長湍居金聖集，年歲家閥，探問啓本，則漢城府，追別單判下傳教，只拈出金聖集探問一條，而節談馳啓，此專由乎備局行關之本自刪節而然，事極未安，當該堂上，從重推考，何如？傳曰，允。”; 3월 24일. “以京畿監司金文淳啓本，長湍居金聖集，年歲家閥，詳探馳啓事，傳于趙尙鎮曰，卿其招見相當可合之任，論理狀聞事，回諭。”; 3월 27일. “○以京畿監司金文淳狀啓，長湍金聖集，可合本府中軍之任事，判付內，中軍之任，豈煩朝令之事，營邑自可舉行者，忠壯將爲先作窯擬入，年已老，使之一番入直後減下送事，分付該曹該道爲良如教。○兵曹口傳政事，以金聖集爲忠壯將。”; 4월 5일. “李晉秀，以兵曹言啓曰，新除授忠壯衛將金聖集，纔已上來，一次入直後呈訴，下去本鄉矣。依傳教，本職減下之意，敢啓。傳曰，知道。如未下去，明日入侍後下去，如已下去，置之，可也。”

3월 22일 이전에 이미 동지중추부사에 가자했는데, 전날 소장하던 예필을 살펴본 정조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병조판서에게 그가 원하는 바를 묻게 하였다. 이에 그는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로 남은 바람은 없으나 당장의 형세가 극히 궁핍하니 변장(邊將)이라도 원한다고 했고, 이에 정조는 6월에 그를 빙 대궐인 경복궁의 위장(衛將)에 단부시켜 오래 임직하게 했다.<sup>52)</sup>

이처럼 예필 현납자에 대한 정조의 작상은 두터웠는데 특히 강성언·함대일의 경우가 그렇다. 강성언이 바친 것은 “예필”이라 적혀 있고 함대일이 바친 것은 “하시받은 문적(受賜文蹟)”이라 적혀 있어 어떤 필적이었는지는 미상이나 필시 이대심이 바친 시문고 3점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소중한 필적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이 밖에 예필을 현납했을 최선기(崔善起)에 대한 포상기록이 『승정원 일기』에 보이지 않는데, 그는 1761년 4월 22일 장현세자가 평양밀행에서 돌아오는 날 공사청(公事廳: 왕명을 전하는 내시의 숙직처)의 차비대령 별감으로 입직했던 일로 인해 다른 9명의 별감과 함께 그해 9월 22일 엄형을 받은 뒤 나주목 지도진(智島鎮)에 정배되었다가 이를 뒤 3명과 함께 풀려났던 최선기로 여겨진다.<sup>53)</sup> 또 평양부 동면 율사동에 거주하는 통덕랑 서필영(徐必榮)에 대해서도 『승정원일기』에 보이지 않는다. 장현세자가 1761년 4월 9일 그의 자손에게 잡역을 면제하라는 분부를 써주었는데 당시 서필영은 부역을 면한 노년이었던 듯하며 따라서 1796년경에는 이미 사망했으리라 여겨진다.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52)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3월 22일. “○李海愚, 以兵曹言啓曰, ‘依傳教, 同知黃錫耆招來, 問其所願, 則以為頂踵毛髮, 罔非天恩, 感祝無地, 而敢更有餘望, 而目今形勢, 極其窮乏, 糊口沒策, 所願在於邊將云矣, 敢啓.’ 傳曰, 邊將則窠乏, 空闕衛將, 作窠單付, 陞資間, 久任, 可也. ○兵曹口傳政事, 景福將單黃錫耆.”; 6월 22일. “兵批 [...] 同知黃錫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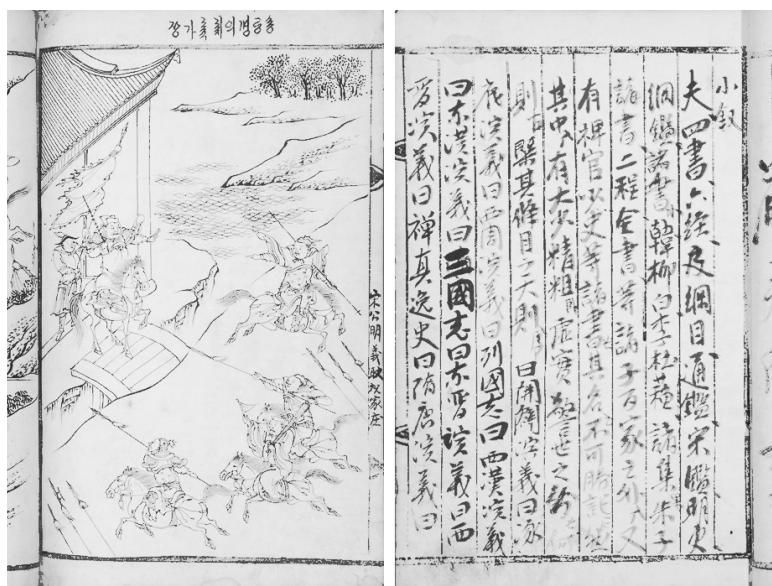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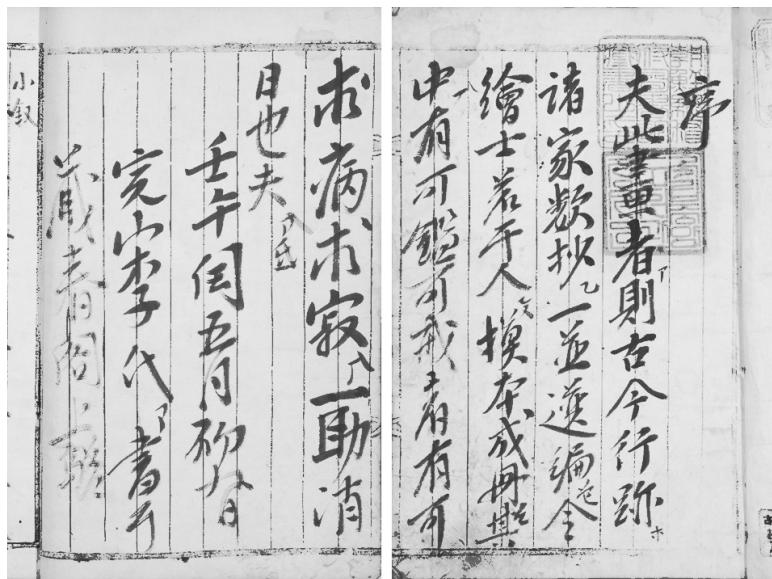
53) 『승정원일기』 영조 37년(1761) 9월 22일. “李翼元, 以刑曹言啓曰, 去四月二十二日入番別監行首及差備待令別監嚴刑一次後, 兩南海島分配卽爲押送, 其餘決杖一百事, 命下矣. 去四月二十二日入番別監行首朴世偉, 差備待令別監孫德壽·李廷祥·金旼·崔善起·姜福起·趙德新·尹濟殷·嚴漢徵·李有績, 各嚴刑一次後, [...] 崔善起羅州牧智島鎮 [...] 各決杖一百後放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9월 24일. “李光灝, 以刑曹言啓曰, 公事廳待令二人, 政院·侍講院二人放送, 其餘仍配, 持此來呈別將, 決杖一百, 端川府定配事, 命下矣. 日昨發配罪人中, 公事廳待令別監孫德壽·崔善起, 政院待令別監嚴漢徵, 侍講院待令別監金旼, 竝放送事, 發關分付於各該道, 而持此來呈別監趙德斌, 決杖一百後, 端川府卽爲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표5-『승정원일기』의 장현세자 예필 헌납자 관련 기록

성명(거주지 신분)	爵賞 등	『승정원일기』
<b>康聖彦</b> 서울 西部 宮任 지냄	1787년 예필 奉納. 1796. 3. 15 가선대부 때 1760년의 溫幸 隨駕人으로 실직 僉知中樞府事秩에 加資. 3. 22 실직 同知中樞府事에 單付, 아들 兵曹 胥吏에 총원.	正祖 11년(1787) 8월 17일 · 19일; 正祖 20년(1796) 3월 15일 · 22일, 4월 12일
<b>咸載一</b> 평양부 佐理功臣 東平君 咸禹治의 후손	道臣에게 그와 자손의 任役을 보고하고 이들 前忠壯將 咸正禧 · 한량 咸正祐를 상경시켜 만나본 뒤 함정희를 御營廳 별군직에 특차, 이조 · 병조에 수속 · 諸將 자리가 나면 差遣하라 분부. 함정호를 道臣에게 鄉將官에 先差하고 차차 收用하라 유시. 4월 12일 함정희 동지중추부사에 單付, 이튿날 경상우도 통영 統虞候에 補任.	正祖 20년 3월 22일 · 29일, 4월 11일 · 12일 · 13일
<b>李大心</b> 평양부 反浦六里 幼學	道臣에게 去處 · 役名을 보고하게 하고 兵曹에 아들 李夢彪를 特別히 임용하라 분부.	正祖 20년 3월 22일 · 29일
<b>金聖集</b> 경기도 長湍 楠木里 良人인 듯	道臣에게 나이와 집안에 대해 보고하고 의정부에 收用 여부를 알리게 함. 행적을 찾지 못한 듯함.	正祖 20년 3월 22일 · 23일 · 24일
<b>黃鍾耆</b> 거주지 미상 武官	1796년 3월 이전 동지중추부사에 加資. 이후 兵判에게 원하는 바를 물어 경복궁 衛將에 單付시켜 久任하게 함.	正祖 20년 3월 22일, 6월 22일
<b>崔善起</b> 거주지 미상 內侍	1761년 4월 22일 公事廳 차비대령 별감으로 入番한 일로 9월 22일 엄형을 받고 羅州牧 智島鎮에 定配, 이를 뒤 放逐됨.	英祖 37년(1761) 9월 22일 · 24일

이상의 『승정원일기』 기록과 장서각 등의 예제예필을 통해 종합해보면, 정조는 즉위 후 관서에 남겨졌거나 궁중에 전래하는 예제예필을 모아 장현세자의 시문을 정리한 듯하다. 특히 편집과정에서 밀년의 예제를 좀 더 보충하려는 뜻이 있었던 듯 곳곳에서 예필이 헌납되고, 이를 보가하여 '장현세자예제 7권'의 편집을 마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정조의 편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장현세자의 마지막 문고로 보이는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의 서(序)와 소서(小敍) 2편이 주목된다(삽도5). 글씨는 1756년의 오칠언시고 4점(도2-도5)과 흡사하여 장현세자의 전형적인 서풍이라 말할 수 있다. 이 2편의 글은 그가 서거하기 스무 날 전인 1762년 윤5월 9일에



십도5-장현세자, 《중국소설회모본》 서(序), 제1, 6면(위): 소서(小敍) 제1면 및 그림(아래), 1762년 윤5월 9일 쓴, 36.4×23cm 선장, 국립중앙도서관.

중국 역사소설의 주인공을 묘사한 그림을 회사(繪士) 김덕성(金德成, 1729-1797) 등을 시켜 모사하게 한 뒤 그 시말을 적은 것이다. 각자의 말미에 “임오년 윤5월 초9일 완산이씨가 장춘각 위에서 쓰다(壬午閏五月初九日 完山李氏書于藏春閣上焉)” · “임오년 윤5월 초9일 완산이씨가 여휘각 위에서 쓰다(壬午閏五月初九日 完山李氏書于麗暉閣之上)”라고 적혀 있다.<sup>54)</sup> 서문은 역대 인물의 갑계와 허실에 관해 약술하고 이 책이 병을 고치고 심심함을 달래는 소일거리라는 내용이다. 소서는 4서 · 6경 · 역사서 · 당송시집 · 제자백가서 외에 패관소사(稗官小史) 등의 책에는 대소(大小) · 정조(精粗) · 허실(虛實) · 경세(警世)의 구분이 있다면서 수십 종의 예를 나열하고 김덕성 등에게 그림을 모사시켰는데 역대 사적을 뚜렷하게 볼 수 있기에 자손에게 전하니 데면데면 보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들 글은 『능허관만고』 권7에 「화첩제어(畫帖題語)」와 「후제(後題)」란 제목으로 실렸는데, 원래 글에서 지나치게 개작하여 사도세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되었고, 특히 소서에서 거론한 소설과 잡서 93종은 시문집의 「후제」에서 모두 삭제되었다.<sup>55)</sup>

이러한 개작(改作) 태도는 정조가 오륜(五倫)과 삼물(三物, 鄉三物)<sup>56)</sup>로 학교를 크게 일으키고 정학(正學)을 밝혀 사술(邪術)을 물리치며 경훈(經訓)을 존중하고 패품(稗品: 패관류 소품)을 물리쳤다는 행장 구절처럼<sup>57)</sup> 그의 경세적(經世的)인 문학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그가 재위 후년에 들어가 임란 이후 유행된 명청대 패관소설류와 신체문(新體文) 그리고 서학(西學)에 젖어들어 크게 변질된 조선의 문체를 국초의 질박한 문풍으로 회귀시키고자 ‘문체반정(文體反正)’을 벌였던 데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58)</sup>

이상에서 본 바 정조의 장현세자 예필 수집과 예제 편집에 관한 기록을

5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朝82-11 支那歷史繪模本. 1책 27.9×19.0cm. 장춘각과 여휘각은 모두 창경궁 通明殿에 딸린 건물이었다.

55) 이에 관해서는 정병설,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中國小說繪模本』, 『문헌과 해석』 통권 47호(문헌과 해석사, 2009 여름), 126-135쪽 참조.

56)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 六德 · 六行 · 六藝를 말함. 『周禮』 권3, 地官 大司徒. “以鄉三物, 教萬民而賓興之, 一曰六德, 知仁聖義忠和, 二曰六行, 孝友睦姻任恤, 三曰六藝, 禮樂射御書數.”; 朱熹, 『小學集注』 권1 内篇, 立教 제1. “周禮大司徒, 以鄉三物教萬民而賓興之, 一曰六德, 知仁聖義忠和, 二曰六行, 孝友睦姻任恤, 三曰六藝, 禮樂射御書數.”

57) 『정조실록』 行狀. “五教三物, 大興庠序, 明正學而闡邪術, 崇經訓而黜稗品.” 三物(鄕三物)은 六德 · 六行 · 六藝.

58) 문체반정은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효령출판, 2001), 14-82쪽 참조.

표6-장서각 외 장현세자 예필목적(睿筆墨蹟) 목록

명칭/작성시기	표제, 장황, 크기, 소장처, 내용 등	참고문헌
‘孝奉’ 大字 연대미상	帖粧 43.6×31.8cm, 흥기창 1785년 7월 洪龍漢(1734-1809) 跋 1806년 秋 흥용한 追跋	『영·정조시대 풍산홍씨家 유물기증전』(2009), 53쪽, 56-61쪽.
‘君臣有義’ 등 大字 1742. 12. 11	東宮寶墨, 帖粧 37.5×22.9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발문: ..... 丙寅仲春上澣, 通訓大夫行掌樂院僉正 臣李益塏謹識.	『思悼世子』(수원화성박물관, 2012), 90-91쪽.
封書 1744경	帖粧 44.4×31.6cm, 山口縣立圖書館 석문: 安否如何. 기례 후 장인 장모에게 처음 올린 睿札	『思悼世子』, 100쪽.
答宮僚故事／七言詩 1747／1748. 3. 4	青宮寶墨, 帖粧 43×25.5cm 畫書, 흥기창 발문: .....歲戊辰叔父在桂坊時, 命賜分兒一件. 世子翊衛司 관원에게 나눠준 예필 모서	『능하관만고』 권6 答宮僚故事 『丁卯故事』. 『思悼世子』, 92-93쪽.
左議政趙顯命處手書 1749. 8. 20	東宮邸下手諭 帖粧 40.1×68.6cm, 경남대학교박물관 대리청정 때 좌의정 趙顯命의 사직을 만류하며 써 내린 친서	『능하관만고』 권5 『左議政趙顯命處手書』己巳;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8월 20일. 『思悼世子』, 94-95쪽.
左議政趙顯命處手書 1751. 7. 21	東宮邸手下書 帖粧 40.2×87.4cm, 경남대학교박물관 免職을 청한 좌의정 趙顯命에게 국사에 복귀하라는 친서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7월 21일 『思悼世子』, 96-97쪽.
『小學』 傳賜記·小識 1753. 9. 22	線粧 36.5×23.7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36년 부왕에게 받은 『小學』을 18년 뒤 세손에게 주면서 쓴 기문과 칠언시 소지	『제왕으로 가는 길』(수원화성박물관, 2011), 28-29쪽.
成均館捲堂達批 1754. 7. 7	御筆 帖粧, 36.5×23cm, 제주추사관 성균관 유생들의捲堂(집단 행동)을 타일러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批答	『능하관만고』 권3, 『成均館捲堂達批』甲戌;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7월 7일 『思悼世子』, 98-99쪽.
封書 (丈人前) 1753-1755?	帖粧 44.4×31.6cm, 山口縣立圖書館 장인 흥봉한에게 올린 여러 통의 睿札	『思悼世子』, 100-101쪽.
王世子問批 1762. 4. 29	帖面 5면 寫眞, 국사편찬위원회 제1면 20×16cm, 帖粧 32×23.5cm 경북 봉화 乃城面 酉谷里 權鼎燮 舊藏	『思悼世子』, 98-99쪽.
中國小說繪模本 序·小敍 1762. 윤5. 9	支那歷史繪模本 線粧 27.9×19.0cm, 국립중앙도서관	『능하관만고』 권6 『畫帖題語』·「後題」 『思悼世子』, 106-107쪽.

고려하면, 장현세자의 예필이 상당수 전래되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아직 과문(寡聞)이겠지만 현존하는 장현세자 예필은 그리 많지 않다. 짧은 생애를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후 바로 복위되었으나 영조의 금령에 따라 그에 대한 추숭이 바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그간 알려진 장서각 이외의 장현세자 예필목적의 목록을 참고로 제시한다 (표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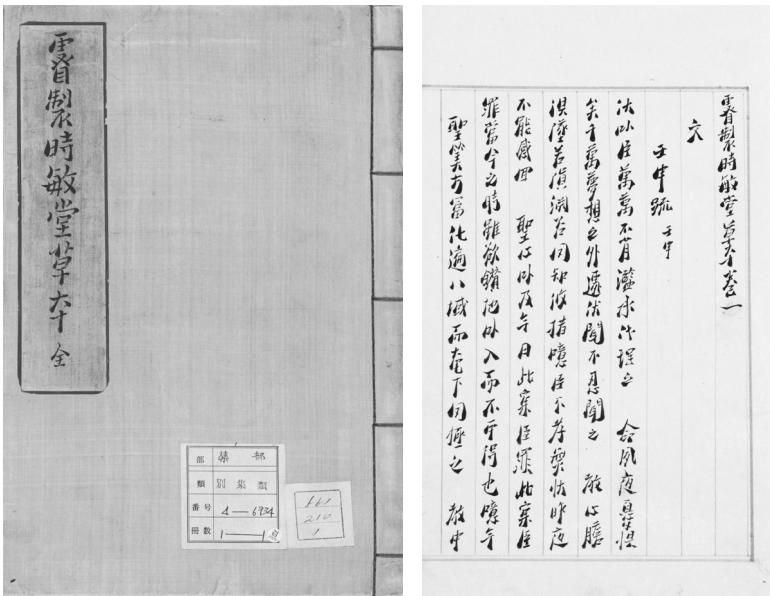
## 2. 장현세자 시문집(詩文集)의 편집

장현세자의 시문집으로 『예제시민당초본(睿製時敏堂草本)』과 『능허관만고(凌虛關漫稿)』가 전한다. 먼저 『예제시민당초본』 2권 1책(삽도6)은 장현세자 사후에 세손 이산이 정리하여 필사한 초본으로 여겨진다. 시민당은 창경궁 건물로 1749년 대리청정 이후 장현세자가 머물던 곳이다. 필사 서풍은 마름모꼴 글자 틀(字型)에 획의 기울기가 심하고 첫 획을 굵게 기필하거나 획 아래쪽을 굵게 누르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필사 습관은 1772년에 세손이 외조부 홍봉한에게 올리거나 빙객 채제공에게 보낸 예찰에 나타나는 반면 즉위 이후의 필적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초본의 글씨는 그러한 특징이 좀 더 투식화되었다는 점에서 1772년 이후 1776년 즉위 이전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sup>59)</sup>

『예제시민당초본』 각권의 앞쪽에 목록이 실려 있다. 권1에는 38편의 글로 1752년 영조가 세자에게 전위(傳位)하려 하자 자신의 죄를 자책하며 올린 「임신소(壬申疏)」 3편을 비롯하여 화협옹주(和協翁主, 1733-1752) · 정부인 이씨(1676-1755, 화협옹주 시어머니) · 일성위(日城尉) 정치달(鄭致達, 1737-1757, 화완옹주의 남편)의 제문, 정성왕후 관련 진향문 4편 및 「답고사(答故事)」 · 「하궁료(下宮僚)」 등 세자시강원 관료들과 문답한 28편이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권2에는 부시(賦詩) 42편으로 1751년의 「연상부(延祥賦)」를 비롯하여 사언시 12편, 오언시 10편, 육언시 1편, 칠언시 18편의 목록이 적혀 있는데, 필사 부분은 오언시가 시작되는 「화선(畫扇)」(1747) 앞쪽까지만 남아 있다.

다음 『능허관만고』 7권 3책(삽도 7)은 속표지에 '장현세자예제(莊獻世

59) 이완우, 「세손 이산(李聃)의 예필 서풍」, 『正祖御筆帖』 -壬辰睿札과 己未御札-(한국학 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59-6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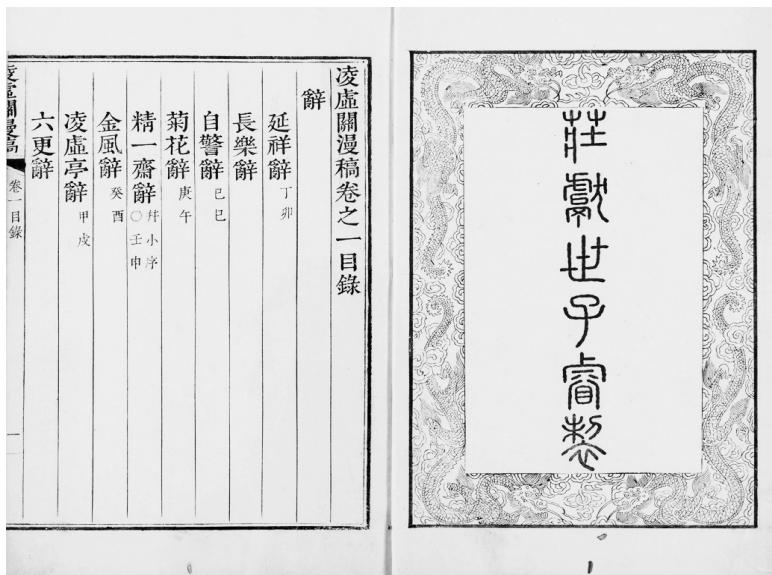


삽도6-세손 이산 필사, 『睿製時敏堂草本』, 30.2×18.9cm 선장, 장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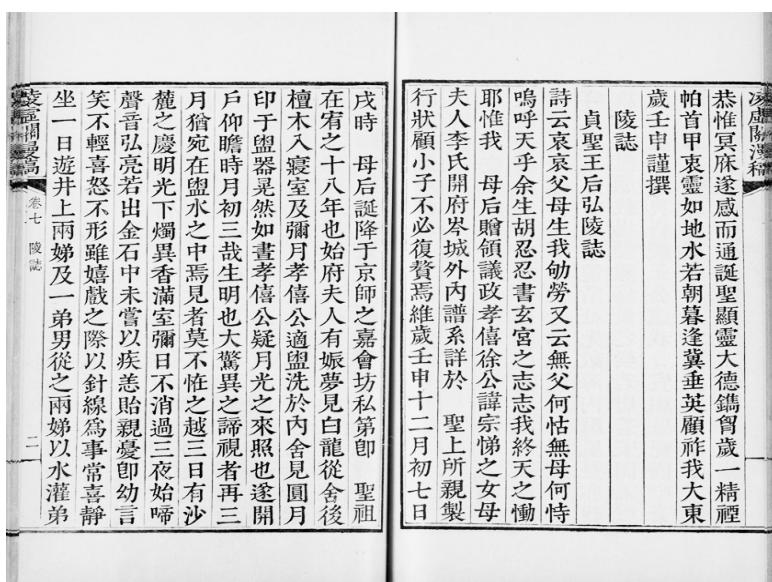
삽도6-1-『예제시민당초본』 권1의 「임신소(壬申疏)」 부분.

子睿製)란 명칭으로 1814년에 정종대왕어제(正宗大王御製) 『홍재전서(弘齋全書)』와 함께 정리자(整理字)로 간행되었다. 『정조실록』에 실린 「행장(行狀)」의 23년(1799) 부분을 보면 “장현세자예제 3책을 엮어 펴냈는데 수집과 교정에서부터 지우고 고치고 오려 붙이는 일까지 모두 손수 하였다. 학문의 깊이가 나라 사람이 칭송(稱誦)할 정도였는데 왕은 세자의 수택(手澤: 손길 닿은 흔적)에 감모하여 그것들을 내부(內府)에 간직해두었고 이때 와 마침내 몸소 편집(編帙)로 만들었다. 이것은 장차 열성의 모훈(謨訓: 남기신 교훈의 글)과 함께 높이 모시고 오래 전하여 다하지 못한 효심을 표해보려는 뜻이었다”고 적혀 있다. 또 『국조보감』 1799년 11월조에도 정조가 장현세자예제 『능허관만고』를 직접 교열하여 3책으로 편성했다고 적혀 있다.<sup>60)</sup> 따라서 『능허관만고』는 아들 정조가 현릉원 조성, 수원성 축조 등 추숭사업을 본격화하던 재위 후년에 선친의 시문을 모아 문집을 편성하고 교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0) 『정조실록』 부록 「行狀」 23年(1799) 條. “編成莊獻世子睿製三冊，自彙輯釐校，以至塗改剪貼之事，悉經御手。睿學之淵邃，國人所誦，而王感慕手澤，藏之內府，至是始躬成編帙。蓋與列聖謨訓，尊閭壽傳，以寓不洎之孝思也。”；『國朝寶鑑』 권75, 正祖朝 己未 23년(1799) 11월. “莊獻世子睿製，有凌虛闕漫稿，上親自校閱，編成三冊。”



삽도7-장현세자예제, 『능허관만고』, 1799년 정조 편집, 1814년 간행, 7권 3책,  
정리字本, 34.5×21.7cm 線粒, 장서각.



삽도7-1-『능허관만고』 권7의 「정성왕후홍릉지」 부분.

정조 승하 후 1801년(순조 1) 12월에 규장각에서 선왕 정조의 어제와 세손 때의 시문 184편을 100책으로 장황하여 올렸고 1803년 5월에 경모궁 예제(景慕宮睿製) 선사본(繕寫本) 7권을 올렸다.<sup>61)</sup> 그 뒤 1813년 순조가 내각에 명해 정종어제전서(正宗御製全書)를 교정 인출하게 했고 이것이 완성되자 또 시문을 『열성어제(列聖御製)』에 합쳐 편찬하고 이어 장현세자예제를 인출하여 간행하게 했으며, 이듬해 1814년 3월에 일이 마무리되어 규장각에서 정종대왕어제 『홍재전서』 100책과 경모궁예제 3책을 각 30건씩 인쇄하여 올리자 각각을 봉모당(奉謨堂) · 주합루(宙合樓) · 망묘루(望廟樓: 경모궁 정조어진 봉안처) · 화령전(華寧殿: 수원성 정조어진 小本 봉안처) · 문헌각(文獻閣: 경희궁 장서처)과 다섯 곳의 사고(史庫) 및 외규장각 · 내각 · 홍문관 · 세자시강원에 받들어 간직하게 하고, 교정하고 인출을 감독한 각신 이하에게 시상했다.<sup>62)</sup>

『능허관만고』에는 권1에 시류(詩類) 137편, 권2-7에 문류(文類) 561편, 모두 698편이 실려 있는데 이는 『예제시민당초본』의 80편에 비해 아홉 배에 가까운 수이다. 이로 보면 정조가 즉위 후 장현세자의 예제를 널리 찾아 시문집 편집에 적극 반영했고 그래서 1799년(정조 23)에 가서야 장현세자예제의 편집을 마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편집은 일반적인 문집의 순서를 따랐는데 같은 분류 안에서는 연도순으로 했다. 1747-1761년(13-27세)에 지은 사(辭) · 부(賦) · 시(詩)를 비롯하여 대리 청정 때인 1749-1761년의 소(疏) · 계(啓) · 비판(批判) · 수서(手書) · 돈유(敦諭) · 영지(令旨)와 1747-1753년의 답궁료고사(答宮僚故事) · 하궁료서(下宮僚書) 그리고 1747-1762년의 제(題) · 서(序) · 비명(碑銘) · 능지(陵誌) · 진향문(進香文) · 치제문(致祭文) · 잠(箴) · 명(銘) · 찬(贊) · 고례(誥禮) · 여체(儻體) · 설(說)로 구성되어 있다.<sup>63)</sup>

61) 『순조실록』 1년 12월 11일. “奎章閣, 以先朝御製, 春邸錄四編 [...] 凡一百八十四編, 完粧爲一百冊, 進獻. 命校準閣臣以下, 施賞有差.”; 3년 5월 13일. “內閣進景慕宮睿製繕寫本七卷, 校正閣臣以下施賞.”

62) 『순조실록』 14년 3월 22일. “奎章閣, 印進正宗大王御製弘齋全書一百冊, 景慕宮睿製三冊, 各三十件. 教曰, 先朝御製, 奉謨堂、宙合樓、望廟樓、華寧殿、文獻閣五處史庫外, 奎章閣、內閣、玉堂、春坊, 各一件奉藏. 又教曰, 景慕宮睿製, 奉謨堂、宙合樓、望廟樓、華寧殿、文獻閣五處史庫外, 奎章閣、內閣、玉堂、春坊, 各一件奉藏, 仍命校正監印閣臣以下, 施賞有差.”; 6월 24일, “奎章閣印進正宗大王御製, 列聖御製合附本二十二冊七十件. 教曰, 正宗大王御製, 列聖御製合附本, 奉謨堂、文獻閣、五處史庫外, 奎章閣、內閣、玉堂、春坊西庫, 各一件奉藏, 監印閣臣, 各一件頒給…….”

63) 권오영, 「解題」, 『英祖 · 莊祖文集 -御製集慶堂編輯 · 凌虛關漫稿』 韓國學資料叢書 12

전체적으로 권1과 권7의 일반 시문에 비해 권2에서 권6까지의 정무 관련 글이 많은데 특히 권2-4의 비판(批判)<sup>64)</sup>은 451편으로 전체의 반을 넘는다. 이러한 점은 장현세자가 1749년부터 십여 년간 대리청정을 했기 때문이며, 또 정조가 이 시기의 글을 적극 보가하여 대리청정을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괄호 안은 편수).

- 권1 辭(8) 1747-1754년, 賦(6) 1751-1756년, 詩(123) 1747-1761년  
권2 疏(3) · 啓(7) 1752년, 批判(138) 1749-1752년  
권3 批判(181) 1753-1755년  
권4 批判(132) 1756-1761년  
권5 手書(11) 1749-1756년, 敦諭(7) 1751-1761년, 令旨(37) 1749-1761년  
권6 答宮僚故事(5) 1747-1751년, 下宮僚書(3) 1750-1753년,  
題(8) 1754-1762년, 序(2) 1757년  
권7 碑銘(1) 1752년, 陵誌(1) 1757년, 進香文(7) 1757년, 致祭文(3) 1752-  
1757년, 節(13) 1747-1750년, 銘(3) 1749년, 1760년, 賛(2) 1752년, 誥禮  
(3) · 儀體(2) · 說(2)

『능허관만고』에는 『예제시민당초본』의 시문 80편 가운데 51편이 수록되었다. 문류(文類)는 38편 중 29편이 실렸는데 「임신소」 3편과 정성왕후 관련 진향문 4편, 화협옹주 등의 제문 3편 그리고 「답고사」 13편과 「하궁료」 6편이다. 시류(詩類)는 42편 중 22편이 실렸는데, 유일한 부(賦) 였던 1751년 「연상부」는 1747년 「연상사(延祥辭)」로 바뀌어 실렸고, 사언시 12편은 맨 앞의 1747년 「실제(失題)」만이 「일출동방(日出東方)」이란 제목으로 실렸으며, 유일한 육언시 1편도 실리지 않았다. 또 오언시 10편과 칠언시 18편은 각각 8편, 12편이 실린 것으로 여겨진다.<sup>65)</sup> 연대가 바뀐 것으로 위 「연상사」 외에 1748년의 「답고사」 2편이 1753년으로 바뀌었다. 또 원문에 대한 교정의 수위를 살펴보면, 『능허관만고』 권1 「연상사」와 사언시 「일출동방」, 권2 「사전위소(辭傳位疏)」 3편, 권6 「답 궁료고사」 13편과 「하궁료서」 6편은 대체로 윤문 정도에 그쳤으나 이에 비하여 진향문 4편과 치제문 3편 중에는 대폭으로 수정한 예들이 많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223-244쪽 참조.

64) 비판(批判): 신하가 올린 상소[疏劄]와 여쭙에 대한 왕 또는 대리청정을 하는 왕세자의 답변 즉 비답(批答)과 어떤 사안에 대한 판결/처리를 뜻함.

65) 오언 · 칠언시는 『예제시민당초본』 권2 목록으로 추산했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IV. 맷음말

장서각 소장의 장현세자 예필진적 12점은 1749년 대리청정을 시작한 한참 뒤인 1756년, 1757년, 1758년, 1761년의 후년기 필적이다. 이들 필적은 대부분 정조 때에 현납을 통해 수집된 것들로 그중 9점이 정조가 편집한 장현세자의 시문집 『능허관만고(凌虛關漫稿)』(1814년 간행)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정조가 세손 시절 말에 편집한 것으로 여겨지는 『예제시민당초본(睿製時敏堂草本)』에 소략하게 실렸던 시문이 『능허관만고』에 아홉 배에 가까운 수량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정조가 장현세자의 예제예필을 널리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문집에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서각의 예필진적은 장현세자 예제예필의 수집과 편집에 관한 당시의 정황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예들이다.

먼저 1757년 3월경에 작성한 〈홍릉지문초(弘陵誌文草)〉가 주목된다. 『영조실록』에는 정성왕후의 홍릉지문이 영조의 어제로 실려 있으나 『능허관만고』에는 장현세자의 예제로 실려 있는데, 이 초본이 홍릉지문을 장현세자의 예제로 인식하는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1756년의 시고 4점 중 오언절구 시고는 시문집의 1753년 부분에 실려 있고, 1758년 칠언절구 시고 2점은 시문집의 1756년 부분에 실려 있어 시문집 편집에서의 일부 오류도 알려준다.

다음으로 장현세자가 1761년 4월 평양에 밀행했을 때 남긴 시문고 5점 가운데 유학 이대심(李大心)에게 써준 것으로 말미에 예압(睿押)이 있는 2점이 주목된다. 하나는 이대심이 선조(宣祖)의 후예로 화의군(花義君)의 손자임을 밝힌 영지(令旨)인데, 대리청정을 하는 왕세자가 발부하는 정식의 영지와 다른 특이한 예이다. 이 영지의 내용이 『능허관만고』의 ‘영지’ 항목에 실리지는 않았으나 ‘제(題)’ 항목에 「제권(題券)」이라 하여 앞쪽 사언구 16자를 실었음을 보면, 정조는 이를 증서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대심이 보낸 회답 서찰의 여백에 쓴 발문으로 “평양의 변화함을 보며 북해를 뛰어넘는 웅대한 심회를 꿔고자” 했다고 평양에 간 목적을 밝혀놓았다. 장현세자의 평양밀행에 관해 여러 추측이 있으나 일단 이 발문은 그가 적은 유일한 기록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으로 통덕랑 서필영(徐必榮)의 자손에게 잡역을 면제시킬 것을 명한 분부(分付)는 장현세자가 쓰고 말미에 수행자가 압자(押字)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문 예이다. 위의 3점은 왕세자가 자신의 뜻을 명시하고자 직접 필사하고 말미에 자신 또는 수행자의 압자를 남긴 점에서 문서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예필 문서나 어필 문서에 관해 고문서학(古文書學) 분야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예필진적 시문고 12점 가운데 『능허관만고』에 실린 9점의 내용을 원적(原蹟)과 비교해보면, 자구를 지나치게 수정하거나 개작(改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장서각 외에 전하는 몇몇 장현세자 예필 문고에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정조의 편집 태도는 물론 선친에 대한 애듯한 정성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시문에 대한 정조의 경세적(經世的) 시각도 작용했을 것이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끝으로 1756년경 이후 장현세자는 병증의 악화로 인해 여러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혹 그러한 점이 글씨에도 나타나는지를 의문하기도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 장현세자의 예필진적은 정상적이다. 누구든지 글씨 쓸 때의 신체 상태나 주위 상황에 따라 약간씩 편차가 나기 마련인데 장현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757년 3월경의 〈홍릉지문초〉는 고법을 바탕으로 또박또박 쓴 원고로 그의 예필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또 1756년의 오칠언시고 4점은 거침없고 유려한 필치에서 말년작인 1762년 윤5월 9일의 《중국소설회모본》 서문과 함께 그의 전형적인 서풍으로 거론할 만하다. 이에 비하여 1758년 봄에 횡석기와 김선기에게 써준 칠언시고는 좀 어리숙하고 위축된 듯하며, 1761년 4월 3일에 장단의 김성집에게 써준 칠언시고는 좀 거칠고 제멋대로의 운필에서 약간의 흥분도 느껴진다. 그리고 1761년 4월 8-10일 평양의 이대심과 서필영에게 써준 4점은 범상하다. 장현세자 예필은 세련되지 않은 순수한 글씨인데, 부친 영조의 영향을 받은 것 외에 당시의 유행 서풍을 따르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장서각 소장의 장현세자 예필진적은 조선시대 왕실인사의 서예자료로서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정조의 장현세자 예제예필 수집과 시문집 편집과정을 부분적이나마 살필 수 있으며, 특히 『능허관만고』의 예제 시문에 대한 사료비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참 고 문 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國朝寶鑑』.  
『睿製時敏堂草本』, 2권 1책, 필사본, 장서각 K4-6934.  
『凌虛關漫稿』, 7권 3책, 1814년 간행, 整理字本, 장서각 K4-430.  
『璿源錄』, 50권 51책, 1681년 宗簿寺 編, 필사본, 장서각 K2-1047.  
『璿源系譜記略』 5권 4책, 1719년 跋, 목판본, 藏書閣 K2-974.  
<http://www.history.go.kr>

수원화성박물관 편, 『思悼世子』 사도세자 서거 250주기 추모 특별기획전. 2012.  
이완우, 『영조어필』 수원박물관 학술총서 [3]. 수원박물관, 2012.  
藏書閣 편, 『敦寧譜牒』 4책. 韓國學中央研究院, 2006.  
\_\_\_\_\_, 『영조대왕』 특별기획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_\_\_\_\_, 『英祖文集補遺』 韓國學資料叢書 2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0.  
\_\_\_\_\_, 『英祖子孫資料集』 2 思悼世子, 惠嬪洪氏.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_\_\_\_\_, 『英祖子孫資料集』 3 思悼世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_\_\_\_\_, 『英祖子孫資料集』 5 世子, 翁主, 世孫, 王孫.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_\_\_\_\_, 『英祖·莊祖文集 -御製集慶堂編輯·凌虛關漫稿』 韓國學資料叢書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_\_\_\_\_, 『韓國古文書精選』 1 告身·王旨·教旨·令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  
부, 2012.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령출판, 2001.

권오영, 「解題」, 『英祖·莊祖文集 -御製集慶堂編輯·凌虛關漫稿』 韓國學資料叢  
書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223-244쪽.  
박용만, 「사도세자의 삶의 궤적과 한시(漢詩)」, 『英祖子孫資料集』 5(한국학중앙연  
구원 출판부, 2013), 152-158쪽.  
이완우, 「세손 이산(李祿)의 예필 서풍」. 『正祖御筆帖』 -壬辰睿札과 己未御札-,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37-64쪽.  
정병설,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中國小說繪模本』」. 『문헌과 해석』 통권  
47호, 문헌과 해석사, 2009 여름, 126-135쪽.

## 국문요약

장서각에 전하는 莊獻世子(1735-1762)의 예필진적 12점은 1756년, 1757년, 1758년, 1761년의 필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조 때 헌납을 통해 궁중에 수집되었고, 그중 9점은 1799년 정조가 편집을 마친 장현세자의 시문집『凌虛關漫稿』(1814년 간행)에 수록되었다.

먼저, 貞聖王后(1692-1757) 묘지문의 초고인 1757년 3월경의 〈弘陵誌文草〉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영조실록』에서 영조의 어제라 했으나 뒤의 『능허관만고』에 장현세자의 글로 실렸기 때문이다. 이 초고가 홍릉지문을 장현세자 예제로 인식하는 근거가 된 듯하다. 또 1756년 시고 4점 중 오언절구 시고는 시문집의 1753년 부분에, 1758년 시고 2점은 시문집의 1756년 부분에 실려 있어 시문집 편집상의 착오도 알려준다.

다음, 1761년 4월 平壤密行 때의 5점 중 李大心에게 써준 것으로 말미에 睿押이 있는 2점도 주목된다. 하나는 이대심이 宣祖의 후예로 花義君의 손자임을 밝힌 특이한 형식의 侖旨이며, 다른 하나는 이대심의 答札 뒤에 남긴 跋文으로 평양에 간 목적을 밝혔다. 또 徐必榮의 자손에게 잡역을 면제시키라는 分付도 수행자가 押字를 한 드문 예이다. 이들 3점은 세자가 직접 필사하고 자신/수행자의 압자를 남긴 희귀한 문서라는 점에서 앞으로 古文書學 분야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밖에 『능허관만고』에 실린 9점 시문을 보면 原蹟을 너무 수정하거나 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장서각 외 예필 문고에도 나타난다. 이같은 정조의 편집방식은 선친에 대한 애듯한 정성에서 나왔겠지만, 시문학에 대한 經世的 시각도 작용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장서각의 장현세자 예필진적은 보기 드문 서예사료이며 정조의 예제예필 수집과 시문집 편집방식도 살필 수 있다. 특히 『능허관만고』에 실린 예제 시문의 사료적 신빙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 많다.

투고일 2013. 9. 20.

심사일 2013. 11. 14.

제재 확정일 2013. 11. 15.

**주제어(keyword)** 장현세자(莊獻世子, Crown Prince Jangheon), 사도세자(思悼世子, Crown Prince Sado), 예제예필(睿製睿筆, literary works and calligraphies of a crown prince), 능허관만고(凌虛關漫稿, Neungheogwan-mango), 장서각(藏書閣, Jangseogak Archives)